생명의 땅 으뜸 전남

전라남도 도보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022-50호 2022년 10월 13일 (목)

www.jeonnam.go.kr

전라남도
JeollaNamdo

목 차

◈ 조 례

전라남도 조례 제5582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583호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584호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585호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586호 전라남도교육청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587호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규 칙

전라남도 규칙 제3291호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규칙 제3292호 전라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규칙 제3293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훈 령

전라남도 훈령 제1474호 전라남도 차량(버스)운행규정 폐지훈령

전라남도 훈령 제1475호 전라남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

전라남도 훈령 제1476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 고 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2-455호 채종임분 지정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2-459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2-461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2-464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2-466호 함평 금석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공 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2-1087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2-1108호	전라남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2-1109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2-1110호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고

◈ 시군행정

목포시 공고 제2022-1643호	목포 도시계획시설(목포해양대/해사과학관 강의동)사업 공사완료 공고
나주시 고시 제2022-163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나주시 공고 제2022-1355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서류 열람 공고
고흥군 고시 제2022-123호	고흥 군관리계획(궤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흥군 고시 제2022-124호	고흥 군계획시설(가축시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강진군 고시 제2022-156호	수양소하천 개선복구사업 편입토지 등 물건 세목 고시
무안군 고시 제2022-164호	무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남악지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무안군 공고 제2022-1089호	보상계획 공고
영광군 고시 제2022-89호	영광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신안군 공고 제2022-1189호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 공고

◈ 유관기관

광양청 고시 제2022-12호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582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848명”을 “6,86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23명”을 “13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 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총 계	6,864	-						
정무직 계	3	-						
도 지 사	1	1						
자치경찰위원	2						2	
일반직 계	1,965	-						
1급	1							1
2급 ~ 3급	2	1	1					
3급	13	9		1		2		1
3급 ~ 4급	2	2						
4급	88	55	6	7		18	1	1
5급 이하	1,844	-						
전문경력관	15	-						
별정직 계	21	-						
1급 상당	1	1						
2급 상당	-							
3급 상당	-							
4급 상당	7	1	6					
5급 상당 이하	13	-						
연구직 계	277	-						
연구관	39			34		5		
연구사	238	-						
지도직 계	30	-						
지도관	7			7				
지도사	23	-						
소방공무원 계	4,507	-						
소방정	29	6		23				
소방령 이하	4,478	-						
교육공무원 계	61	-						
총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	45			45				
조교	15	-						

※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장, 농업기술원 원장 및 국장 2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공무원 3명은 위 표에서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사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 규정)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583호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 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한다.

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재난 유형 및 규모
2.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 양상 등
3. 시 · 군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결과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도민행복소통실장'과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도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 ·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시 · 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운영경비 지원) 본부장은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시 · 군 지원단 인력 · 자원 지원 현황
2. 시 · 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 · 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라남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구 성	업 무
상황 총괄팀	· 팀장 : 자원봉사 담당부서 담당 팀장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총괄조정 · 시·군과 중앙기관과의 연계업무
	· 팀원 :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대책본부 보고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재정적 지원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수요 파악
대외 협력팀	· 팀장 : 자원봉사센터 팀장 · 팀원 : 자원봉사센터 팀원	·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 타기관 단체간 협력 지원
현장 파견팀	· 팀장 : 자원봉사센터 팀장 · 팀원 : 자원봉사센터 팀원 또는 구호지원기관 직원	· 시·군 지원단 파견 · 지원단 현장 파견 상황관리·보고 및 기타 현장 지원업무 추진
자원 지원팀	· 팀장 : 자원봉사센터 팀장 · 팀원 : 자원봉사센터 팀원 또는 구호지원기관 직원	· 동원 가능한 보유 자원 재난 현장 배분 및 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지원 및 안전조치 · 타시도 재난자원 요청 및 관리

※ 단장은 재난의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팀의 편제와 구성(인원) 및 담당 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584호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7. “국내기업” 이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새로 또는 증액하여 투자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지식정보문화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신규 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국내기업 지원의 준용)”을 “(국내기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시설보조금
3.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 또는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월차임(月借賃) 지원 등 건물임대보조금
4. 신규 고용 창출 및 교육 훈련에 필요한 보조금
5. 원활한 지역 정착을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 등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6. 지식정보문화산업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법인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제18조 중 “수도권 기업 등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수도권 기업 등이 도내로 이전 또는 신설·증설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보칙”을 “국내복귀기업 투자지원”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고,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이 도내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채용하는 경우 조례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고용창출장려금) 도지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는 국내복귀기업이 그 지급기한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23조(종전의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를 “제22조”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585호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우수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그 연계상품과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남도장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명칭)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우수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그 연계상품과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제품 등(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특산물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 · 개발 및 추진
2.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3.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4. 국내외 유관기관과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지원
5. 농특산물 관련 사업체 육성 및 지원
6. 농특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7. 농특산물 유통정책 정보 및 판촉 안내서비스 제공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유관기관 등이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 9명 이상 1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가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출연금 및 기금) ① 전라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도의 출연금, 개인 · 기관 ·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도지사는 농특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 10. 13.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 조례 제5586호

전라남도교육청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을 포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지방공무원(이하 “모범 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모범 공무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2. 「모범공무원 규정」이나 이 조례에 따라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3. 징계 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제3조(추천) ① 모범 공무원 추천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각 과장(과장급 담당관을 포함한다)과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교육장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② 모범 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의 모범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다.

제5조(증표의 수여) 교육감은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그 증표로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모범 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 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 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때
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 10. 13.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 조례 제5587호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치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규칙 제3291호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 시행 및” 을 “에서 위임된 사항과” 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 “시장·군수” ” 를 “ “시장 · 군수” ” 로, “작성·관리하여야” 를 “작성 · 관리해야” 로, “작성·관리” 를 “작성 · 관리” 로 한다.

제5조 중 “처리하여야” 를 “처리해야” 로, “작성·처리 또는 통지” 를 “작성 · 처리 또는 통지”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를 “징수원인 · 세액 · 소속연도 · 세입과목 · 납세의무자 · 납부기한 · 납부장소 및 그 밖의” 로, “하여야” 를 “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여야” 를 “통지해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를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제1항에 따라” 로, “제2항” 을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으로, “기재하여야” 를 “기재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하여야” 를 “관리해야”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다음달” 을 “다음 달” 로, “통지하여야” 를 “통지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납부한 도세 영수필통지서” 를 “영수필통지서” 로,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소인하여” 로, “통지하여야” 를 “통지해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납세액은” 을 “수납세액을” 로,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을 “과소납부한” 으로, “징수하여야” 를 “징수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재하여야” 를 “기재해야” 로 한다.

제8조 중 “도금고에서” 를 “도금고로부터” 로, “소인하여야” 를 “소인해야”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아니한” 을 “않은” 으로, “작성하여야” 를 “작성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하여야” 를 “관리해야” 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장·군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 를 “시장 · 군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 로, “제출하여야” 를 “제출해야” 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부과결정하여야” 를 “부과결정해야” 로, “정하여야 한다” 를 “정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마감하여야”를 “마감해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결손처분의 결정·취소)”를 “(정리보류 등의 결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결손처분은”을 “정리보류는”으로, “결손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손결정을 하여야”를 “정리보류결정결의서에 따라 정리보류결정을 해야”로, “결손처분표(갑, 을)를 작성하여야”를 “정리보류표를 작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결정을 해야 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징수부”를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13조 중 “고액·상습체납자”를 “고액·상습체납자”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고액·상습체납자”를 “고액·상습체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액·상습체납자”를 “고액·상습체납자”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을 “제3항에 따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10조의”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으로, “요구하여야”를 “요구해야”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대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대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로 한다.

제15조 중 “신청서는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를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16조 중 “위원회의 심사”를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74조의2제6항”을 “영 제91조의11제6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4조제2항의”를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1호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부과
[ ] 신고납부
[[ ] 감액] 결정결의서
[ ] 정리보류
[ ] 시효완성정리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도 시·군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내역서

(단위 : 명, 원, %, 호)

구분 / 동	과세표준	세율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계	본세	가산금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부

(단위 : 명, 원)

결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연도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담당자	팀장	과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 · 군 [ ]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	세목	세액(원)			납세인원(명)	납부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단위 : 원)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단위 : 원)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시효완성정리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 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 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 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 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 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oo세																	
oo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단위 : 원)

<table>
<tr><td colspan="2">성명</td><td colspan="2">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4">주 소</td><td colspan="4" rowspan="2">비 고</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부과년월-동-번호-기분</td><td>부과일</td><td>최초기한일</td><td>가산기한일</td><td>○○세</td><td>○○세</td><td>지역자원
시설세</td><td>지방교육세</td><td>농어촌특별세</td><td>부과총액</td><td>체납액계</td></tr>
<tr><td>압류사항</td><td>(중)가산횟수</td><td colspan="2">물건</td><td></td><td>가산금</td><td>가산금</td><td>가산금</td><td>가산금</td><td>가산금</td><td>가산금계</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4"></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4"></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4"></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도 ○ ○기(월)분 (○ ○ 읍·면·동)

과세번호	세목	본세(원)	과년도 가산금 총계(원)	중가산금(원)												가산금 총누계(원)	수납인	체납자 주소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과세물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상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원)						합계 (원)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팀장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정리보류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원)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정리보류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 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을)]

정리보류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원)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1호서식]

시효완성정리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원)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정리보류 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인)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전라남도 공고 제 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년 월 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정리보류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년 월까지 중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전라남도 세정부서 또는 해당 시·군 세정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인)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1. 개인 공개 대상자

년 공개대상자 명단(개인)

(단위 : 백만원)

번호	성명	상호	직업 (업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요

2. 법인 공개 대상자

년 공개대상자 명단(법인)

(단위 : 백만원)

번호	법인			대표자			총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요지
	법인명	업종	소재지	성명	나이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구분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문성 (50)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각 업무 수행 능력 (50)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로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합 계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서식]

압류재산의 인계 · 인수서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 세부사항 기재가 필요한 경우 별지에 작성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누리집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매각재산의 인수증

(1)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				
(4) 대금 납부일 :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규칙 제3292호

전라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를 “등에 조사공무원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하여야”를 “집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구분 실시하여야”를 “구분하여 실시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시장·군수”를 “시장 · 군수”로 하고,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를 “선정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접세무조사”로, “선정하여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기선정 대상의 경우에는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을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는”으로, “식별 할”을 “식별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를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로 하고, “시장·군수”를 “시장 · 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서면조사는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을 “서면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경제·사회정책”을 “경제 · 사회정책”으로 하고,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을 “않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탈세정보자료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고·납부”를 “신고 · 납부”로 하고,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군수”를 “시장 · 군수”로 하고,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한고, “시장·군수”를 “시장 · 군수”로 한다.

5.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조제2호 중 “법 제88조제4항제2호”를 “법 제88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복조사금지)”를 “(중복조사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아니되며”를 “안 되며”로, “철회하여야”를 “철회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하고,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11조 중 “하는 경우에는”을 “할 때에는”으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77조제2항의”를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직접조사를 하는”을 “직접세무조사를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면조사를 하는”을 “서면세무조사를 할”로, “서류에 의하여”를 “서류로”로, “과세의 적정여부를”을 “과세 적정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부분조사를 하는”을 “부분세무조사를 할”로, “항목·부분”을 “항목·부분”으로 하고, “적정여부를”을 “과세 적정성을”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주소·거소·사무소”를 “주소·거소·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장부·서류”를 “장부·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부·서류”를 “장부·서류”로 하고, “예치하고자 하는”을 “예치하려는”으로, “내주어야”를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부·서류”를 “장부·서류”로 하고,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하고,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부분조사의 실시)”를 “(부분세무조사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부분조사”를 “부분세무조사”로 한다.

제23조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복명하여야”를 “복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예방하여야”를 “예방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설명하여야”를 “설명해야”로, “알려주어야”를 “안내해야”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을 “도지사는 조사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발견한”으로,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 · 군수”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 · 군수”로, “현황·조사연혁”을 “현황 · 조사연혁”으로, “작성 · 관리하여야”를 “작성하고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서 다음 각 호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을 “기간 · 내용 · 추징세액 · 추징사유 · 불복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 · 군수”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도지사 및 시장 · 군수”를 “도지사”로, “퇴직·전출”을 “퇴직 · 전출”로, “파기하여야”를 “파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9-1)

지방세 서면조사서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조업 ( )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건설업 (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판매업 ( )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운송업 ( )	
○ 제출일자 : 년 월 일		
	기 타 ( )	

전라남도지사 귀하

(9-2)

지방세 서면세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세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연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전라남도 전체 분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세정과
※ 문의사항 전화 : (061) 286-○○○○

(9-3)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 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9-4)

서식 목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9-5)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사업연도		사업장	도 사군 읍면 번지 호	사업장명	

구분 월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각 사업장별로 별도 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9-6)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시·군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연면적에 대한 세액 ⓓ	③기본 세율 ⓔ	④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							

(9-7)

※ 서식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사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기본세율에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더한 금액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연면적에 대한 세액 : 과세면적 × ㎡당 250원(「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③ 기본세율 :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④ 정당세액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액

(9-8)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시·군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산	계
① 근로소득	ⓐ소계														
	기본급														
	수당(시간외근무 직무·기술수당 등)														
	상여금														
	기타														
② 비과세소득	ⓑ소계														
	육아휴직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 급여														
	기타														
③ 종업원수	계														
	관리														
	생산														
	수시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해야 함

(9-9)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사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수당은 시간외근무, 직무수당, 기술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그 밖의 각종 수당의 합계를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해당 월의 연인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5/1,000)을 곱하여 산출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규칙 제3293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1. 1. 13, 2001. 2. 21, 2001. 7. 30, 2002. 3. 27, 2002. 8. 14, 2003. 9. 25, 2003. 12. 30, 2004. 2. 4, 2004. 2. 24, 2004. 4. 1, 2004. 5. 18, 2004. 7. 6, 2004. 9. 23, 2004. 12. 27, 2005. 6. 17, 2005. 10. 13, 2005. 12. 29, 2006. 1. 31, 2006. 8. 28, 2007. 6. 20, 2007. 8. 3, 2007. 12. 20, 2008. 7. 15, 2009. 2. 5, 2009. 5. 20, 2009. 6. 26, 2009. 7. 31, 2009. 10. 5, 2009. 11. 5, 2009. 12. 31, 2010. 3. 19, 2010. 6. 18, 2010. 7. 13, 2010. 12. 30, 2011. 1. 27, 2011. 3. 11, 2011. 7. 13, 2011. 9. 9, 2011. 9.20, 2011.10.20, 2011.11.11, 2011.12.30, 2012.5.25, 212.8.13, 2013.7.19, 2013.12.12, 2014.8.1, 2014.12.18, 2015.7.15., 2015.12.31. 2016.7.7. 2017.1.5. 2017. 7. 6. 2017. 11. 23.,2018. 8. 2.2019.7.15., 2020.3.26., 2020.6.25., 2021. 2. 18., 2021. 4. 29., 2021. 12. 30. 2022. 3. 31.)

전라남도 직렬별 공무원 정원표

기관별 / 직렬별(직군)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총계	6,864	1,417	139	4,725	273	258	22	30
정무직계	3	1					2	
도지사	1	1						
자치경찰위원	2						2	
별정직계	21	11	8			2		
1급상당 소계	1	1						
관리관 또는 별정1급 상당	1	1						
4급상당 소계	7	1	6					
국제관계대사	1	1						
서기관 또는 별정4급상당(비서관)								
서기관 또는 별정4급상당	4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또는 별정4급상당	2		2					
5급상당 소계	4	3				1		
비서관	4	3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5급 상당(비서관)								
6급상당 소계	6	4	1			1		
비서원	6	4	1			1		
7급상당 소계	2	1	1					
비서원	2	1	1					
8급상당 소계	1	1						
비서원	1	1						
일반직계	1,965	1,234	131	104	220	226	20	30
1급 소계	1							1
관리관	1							1
2급 - 3급 소계	2	1	1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1	1					
3급 소계	13	9		1	2			1
부이사관	12	9		1	1			1
부이사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1				1			

	3급 - 4급 소계	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2						
	4급 소계	88	55	6	7	9	9	1	1
	서기관	43	28	6	4	1	2	1	1
	기술서기관	6	5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7	21			5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또는 농촌지도관	1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2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2			1		1		
	기술서기관 또는 녹지연구관	1					1		
	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2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어촌지도관	1				1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	1	1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2			1		1		
	5급 소계	346	244	18	16	38	19	4	7
	행정사무관	151	110	16	7	3	4	4	7
	농업사무관	6	6						
	녹지사무관	4				4			
	해양수산사무관	8	8						
	시설사무관	21	16		1	1	3		
	수의사무관	2	2						
	방송통신사무관	2	2						
	공업사무관	1	1						
	환경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8	8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					1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1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8	17				1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4	12	1	1				
	행정사무관 또는 녹지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	1	1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6	6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또는 식품위생사무관	1	1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1	1						
	행정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6				6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7	24	1	2				
	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1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	1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	2						
	공업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4				4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1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1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1						
	의무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	1						
	행정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	1						
	보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1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1						
	농업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	1	1						
	행정사무관또는농업사무관또는공업사무관	1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1				1		
	의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	1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또는 녹지사무관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1			1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4					4		
	농업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4	1				3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	1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1						
	의무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또는 간호연구관 또는 수의사무관	1	1						
	의무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또는 간호연구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	1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4				4			
	녹지사무관 또는 녹지연구관	2					2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또는 농촌지도관	1			1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9				9			
	6급 소계	676	475	37	25	72	47	7	13
	행정주사	287	211	24	16	9	7	7	13
	세무주사	9	9						
	전산주사	14	11	1	2				
	사회복지주사	6	6						
	사서주사	2					2		
	공업주사	26	22		2	1	1		
	농업주사	24	22	1	1				
	녹지주사	14	2			9	3		
	수의주사	20	5				15		
	간호주사	2	2						
	보건주사	4	4						
	환경주사	12				12			
	해양수산주사	38	35			3			
	시설주사	75	63		2	2	8		
	방송통신주사	13	13						
	식품위생주사	1	1						
	속기주사	3		3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4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8	7	1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1		
	행정주사 또는 농업주사	1	1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2	2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5	5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1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또는 환경주사	1		1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	1						
	행정주사 또는 녹지주사	1	1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1						
	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1				
	공업주사 또는 농업주사	1	1						

	공업주사 또는 환경주사	4	1			3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2				2			
	약무주사 또는 보건주사	4	4						
	보건주사 또는 간호주사	7	7						
	보건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1	1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3	3						
	보건주사 또는 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	2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1	1						
	보건주사 또는 식품위생주사	3	3						
	보건주사 또는 의무주사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8	5	3					
	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9	6				3		
	농업주사 또는 녹지주사	1	1						
	행정주사 또는 환경주사	2	1			1			
	농업주사 또는 농업연구사	3			1		2		
	수의주사 또는 수의연구사	4					4		
	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또는 수의연구사	1					1		
	해양수산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				2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2	1	1					
	해양수산주사 또는 어촌지도사	28				28			
	선박항해운영주사								
	운전주사	10	8	2					
	기계운영주사								
	7급 소계	717	414	66	30	85	108	7	7
	행정주사보	283	176	54	12	11	16	7	7
	세무주사보	4	4						
	전산주사보	17	13	2	2				
	사회복지주사보	4	4						
	공업주사보	33	13		2	6	12		
	녹지주사보	18				14	4		
	농업주사보	17	13		2		2		
	수의주사보	47	6				41		
	간호주사보	1	1						
	보건주사보	10	8				2		
	환경주사보	8				8			
	해양수산주사보	50	34			16			

	시설주사보	78	63		1	3	11		
	방송통신주사보	11	11						
	사서주사보	5			2		3		
	속기주사보	4		4					
	행정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1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3				1		
	행정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4	4						
	행정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	3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12	12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	5	1					
	행정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2	2						
	행정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		1					
	행정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				2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	1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또는 녹지주사보	1		1					
	행정주사보 또는 녹지주사보	1				1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			1		1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	7		1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7	7						
	보건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1	1						
	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2			
	해양수산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	1						
	공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				2			
	보건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				1			
	보건주사보 또는 식품위생주사보	2	2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	3						
	시설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녹지주사보	1	1						
	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2	2						
	농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5	3		1		1		
	해양수산주사보 또는 어촌지도사	14				14			
	해양수산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				3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	1						
	통신운영주사보	2	1	1					
	운전주사보	21	3	2	2	2	12		
	기계운영주사보	3	1				2		

	사무운영주사보	6	3		3				
	선박항해운영주사보	1	1						
	선박기관운영주사보								
	전기운영주사보	1			1				
	토목운영주사보								
	8급 소계	83	22	2	17	12	29	1	
	행정서기	23	14		7	2			
	환경서기								
	사서서기	5					5		
	공업서기	7		1	2	1	3		
	농업서기								
	시설서기	6					6		
	통신서기	1	1						
	해양수산서기	3	2			1			
	해양서기 또는 어촌지도사	6				6			
	통신운영서기								
	기계운영서기	1					1		
	운전서기	16			6	1	8	1	
	선박항해운영서기								
	농림운영서기								
	위생서기	1			1				
	사무운영서기	13	5		1	1	6		
	속기서기	1		1					
	9급 소계	22	3	1	3	2	13		
	행정서기보	6	2				4		
	해양수산서기보								
	공업서기보	6					6		
	기계운영서기보	1			1				
	선박항해운영서기보								
	사무운영서기보	6	1		1	2	2		
	속기서기보	1		1					
	운전서기보	2			1		1		
	농림운영서기보								
	전기운영서기보								
	전문경력관 소계	15	9		5		1		
	가 군	5	4		1				

	인사평정관리원	1	1						
	시청각기자재관리원	1			1				
	홍보관리원	2	2						
	비상계획원	1	1						
	나 군	10	5		4		1		
	홍보관리원	1	1						
	화생방관리원	1	1						
	농기계교육교관	2			2				
	농업인고충상담원	1			1				
	통계조사관리원	1	1						
	인사통계관리원	1			1				
	정원통계관리원	1	1						
	도로시설관리원	1					1		
	체육지도사	1	1						
연구직 계		277	6		191	50	30		
	연구관 소계	39			34	2	3		
	농업연구관	17			17				
	보건연구관	6			6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			4				
	환경연구관	7			7				
	녹지연구관	1					1		
	학예연구관	2					2		
	해양수산연구관	2				2			
연구사 소계		238	6		157	48	27		
	농업연구사	67			66		1		
	보건연구사	35			35				
	환경연구사	50			50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녹지연구사	9					9		
	수의연구사	11			2		9		
	학예연구사	11	4				7		
	기록연구사	2	2						
	해양수산연구사	48				48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4			4				
	녹지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					1		

지도직 계	30			27	3			
지도관 소계	7			7				
농촌지도관	5			5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2				
지도사 소계	23			20	3			
농촌지도사	20			20				
어촌지도사	3				3			
소방공무원 계	4,507	165		4,342				
소방정	29	6		23				
소방령	111	24		87				
소방경	320	25		295				
소방위	444	28		416				
소방장	737	33		704				
소방교	1,207	32		1,175				
소방사	1,659	17		1,642				
교육공무원 계	61			61				
총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	45			45				
조교	15			15				

전라남도 차량(버스)운행규정 폐지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훈령 제1474호

전라남도 차량(버스)운행규정 폐지훈령

전라남도 차량(버스)운행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훈령 제1475호

전라남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품권 구매 ·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 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 · 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상품권 관리자” 란 상품권을 구매 · 사용 및 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상품권의 구매 ·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구매)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목적, 수량, 금액 등을 명확히 하고 연간 사용수량을 예측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상품권 관리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구매해야 한다.

1. 명절, 생일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2. 전라남도 소속 전 부서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로 도 본청의 상품권 관리자의 통합 구매가 가능한 경우

③ 상품권 관리자는 10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상품권의 종류별 · 구매처별 견적 비교를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해야 한다.

④ 상품권 관리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 비교를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조사 등에 따른 경우
2.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우선 구매하는 경우

제5조(상품권 지급제한) 상품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명절 등에 상급기관 ·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2. 사업홍보 등을 이유로 상급기관 ·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3. 시설관리 등 현업근무자 격려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제6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 · 사용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 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② 관리대장의 구매내역에는 구매일자 · 품명 · 구매목적 · 구매처 · 결제방법 · 예산과목 · 구매수량 ·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고,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자 · 배부처 · 지급수량 · 잔량 · 수령인 소속 및 성명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③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상품권을 배부할 때에는 관리대장의 수령인 란에 수령한 사람이 자필 서명해야 한다. 다만, 수령인의 자필 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중간 수령인이 서명한다.

⑤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 기부금 영수증
2. 물품 등을 구매하여 지급한 경우 : 물품구매 영수증
3. 그 밖의 용도로 지급한 경우 : 관련 증빙서류

제7조(관리 및 감사 등)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구매 ·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 ·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위법 ·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감사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상품권 구매 예산집행의 적절성
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 절차 이행여부
3.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 및 사적 사용 여부
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 등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 상품권을 위법 ·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라남도 감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상품권 구매 · 사용내역 공개) 상품권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품권 구매 · 사용 현황에 상품권의 종류별,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품권 구매 · 사용 관리대장

【 부서명 : 】

연번	구매내역									사용내역						결재		
	구매일자	품명(종류)	구매목적(용도)	구매처	결재방법	예산과목	구매수량(매)	단가(원)	금액(원)	사용일자	배부처	지급수량	잔량	수령인		담당자	팀장	부서장
														소속	성명(서명)			

[별지 제2호서식]

상품권 구매 · 사용 현황

【 부서명 : 】

▣ 구매내역

(단위 : 천원)

구매일자	상품권 종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사용일자	상품권 종류	사용용도	사용수량	사용액	비고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훈령 제1476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라남도 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 제1항 관련】

기관별			총계	집행기관의 정원	소방본부, 소방서및119 특수대응단에 두는소방 공무원의 정원	도립대학교에 두는교육 공무원의 정원	도의회 사무처 의정원	비고
직급별	직렬별	직류별						
총계			6,864	2,157	4,507	61	139	
정무직계			3	3				
정무	소계		3	3				
	도지사		1	1				
	자치경찰위원		2	2				
별정직계			21	13			8	
1급상당	소계		1	1				
	1급·별정		1	1				
4급상당	소계		7	1			6	
	국제관계대사		1	1				
	행정·별정		4				4	
	행정·별정(비서관)							
	행정·기술(농업·수산·축산·수의)·별정		1				1	
	행정·기술(기계·전기·화공·자원·토목·건축·지적)·별정		1				1	
5급상당	소계		4	4				
	비서관		4	4				
	행정·별정(비서관)							
6급상당	소계		6	5			1	
	비서원		6	5			1	
7급상당	소계		2	1			1	
	비서원		2	1			1	
8급상당	소계		1	1				
	비서원		1	1				
일반직계			1,965	1,834			131	
1급			1	1				
2급~3급			2	1			1	
3급			12	12				
3급·해양수산연구관·어촌지도관			1	1				
3급~행정4급			2	2				

4급	소 계		88	82			6	
	행 정	일반행정	43	37			6	
	기 술	축산	1	1				
	행정·기술	일반행정·산림자원	2	2				
	기 술	일반수산	1	1				
	행정·기술	일반행정·일반환경·일반화공	2	2				
	기 술	지 적	1	1				
	행정·기술	일반행정·일반기계· 일반전기·일반화공	2	2				
	행정·기술	일반행정·일반기계· 일반전기	1	1				
	행정·기술	일반행정·일반농업	4	4				
	행정·기술 ·농촌지도관	일반행정·일반농업 ·농업·농촌생활	1	1				
	행정·기술	일반행정·일반환경	1	1				
	행정·기술	일반행정·일반수산	2	2				
	행정·기술	일반행정·일반수산·일반토목	1	1				
	행정·기술	일반행정·일반토목·건축	3	3				
	행정·기술	일반행정·건축	1	1				
	행정·기술	일반행정·일반토목	2	2				
	행정·기술	일반행정·일반화공 ·일반전기·일반기계·자원	1	1				
	행정·기술	일반행정·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	1	1				
	기 술	일반기계·일반토목	2	2				
	행정·기술	일반행정·보건·약무	1	1				
	행정·기술	일반행정·보건·간호	1	1				
	행정·기술	일반행정·일반의무·보건·간호	1	1				
	행정·기술	일반행정·일반전기·일반환경·일반기계	1	1				
	기 술	일반의무·약무·보건·간호	1	1				
	행정·학예연구	일반행정·학예일반	2	2				
	기술·농업연구	일반농업·농업경영	1	1				
	기술·농업연구	일반농업·잠업곤충	1	1				
	기술·농업연구 ·수의연구관	축산·수의·축산·수의	1	1				
	기술·녹지연구	산림자원·임업	1	1				
	기술·수의연구·농업연구	축산·수의·축산	1	1				
	기술·수의연구	수의·수의연구	1	1				

	행정·기술·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	일반행정·일반수산·해양환경·수산자원·수산양식·수산공학·수산가공·수산경제·어촌	1	1				
	기술·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	일반수산·해양환경·수산자원·수산양식·수산공학·수산가공·수산경제·어촌	2	2				
5급	소 계		346	328			18	
	행 정	일반행정	150	134			16	
	행 정	국제통상	1	1				
	행정·사회복지	일반행정·사회복지	8	8				
	행정·사서	일반행정·사서	1	1				
	농 업	일반농업	4	4				
	녹 지	산림자원	4	4				
	농 업	축산	2	2				
	약무·보건	약무·보건						
	행정·시설·녹지	일반행정·일반토목·산림자원						
	해양수산	일반선박	2	2				
	해양수산	일반수산	5	5				
	해양수산	일반수산·일반선박	1	1				
	환 경	일반환경	2	2				
	시 설	일반토목	9	9				
	시 설	일반토목·도시계획	1	1				
	시 설	건 축	6	6				
	시 설	지 적	2	2				
	수 의	수 의	2	2				
	방송통신	통신기술	1	1				
	행정·환경·공업	일반행정·일반환경·화공	1	1				
	행정·공업	일반행정·일반기계	7	7				
	행정·공업·시설	일반행정·일반기계·건축	1	1				
	행정·공업·시설	일반행정·일반기계·건축·일반토목	1	1				
	행정·농업	일반행정·일반농업	13	12			1	
	행정·녹지	일반행정·산림자원	2	2				
	행정·농업	일반행정·축산	1	1				
	행정·수의	일반행정·수의	1	1				
	행정·해양수산	일반행정·일반수산	6	6				
	행정·보건	일반행정·보건	3	3				
	행정·보건·식품위생	일반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일반행정·보건·간호	2	2				
	행정·환경	일반행정·일반환경	6	6				

5급	행정 · 시설	일반행정 · 일반토목	11	10			1	
	행정 · 시설	일반행정 · 건축	3	3				
	행정 · 시설	일반행정 · 지적	3	3				
	행정 · 환경	일반행정 · 일반환경						
	행정 · 방송통신	일반행정 · 통신기술 · 전자통신기술	2	2				
	행정 · 시설 · 공업 · 환경	일반행정 · 일반토목 · 일반기계 · 화공 · 환경	1	1				
	시설 · 환경	일반토목 · 환경	1	1				
	행정 · 공업 · 약무 · 보건	일반행정 · 일반전기 · 화공 · 약무 · 보건	1	1				
	공업 · 환경	일반화공 · 일반환경	4	4				
	행정 · 해양수산 · 환경	일반행정 · 일반수산 · 일반환경	1	1				
	해양수산 · 환경	일반수산 · 일반환경	1	1				
	의무 · 보건	일반의무 · 보건	1	1				
	간호 · 보건	간호 · 보건	1	1				
	시 설	일반토목 · 건축	4	4				
	농업 · 수의	축산 · 수의	1	1				
	행정 · 시설	일반행정 · 일반토목 · 건축	9	9				
	공 업	일반전기 · 자원	1	1				
	방송통신	통신기술 · 전자통신	1	1				
	행정 · 공업	일반행정 · 일반전기 · 일반화공	3	3				
	행정 · 농업 · 해양수산	일반행정 · 일반농업 · 일반수산	2	2				
	행정 · 공업	일반행정 · 일반화공	2	2				
	행정 · 공업	일반행정 · 일반전기 · 일반기계	3	3				
	의무 · 약무 · 보건	일반의무 · 약무 · 보건	1	1				
	행정 · 보건 · 약무	일반행정 · 보건 · 약무	1	1				
	의무 · 보건 · 간호 · 수의	일반의무 · 보건 · 간호 · 수의	1	1				
	행정 · 의무 · 보건 · 간호	일반행정 · 일반의무 · 보건 · 간호	1	1				
	의무 ·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일반의무 ·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1	1				
	행정 · 공업	일반행정 · 일반기계 · 일반전기 · 자원	1	1				
	행정 · 공업	일반행정 · 일반기계 · 일반전기	1	1				
	시설 · 공업	건축 · 일반기계	1	1				
	행정 · 보건 · 사회복지	일반행정 · 보건 · 사회복지	2	2				
	행정 · 보건 · 간호 · 사회복지	일반행정 · 보건 · 간호 · 사회복지	1	1				
	행정 · 방송통신 · 시설	일반행정 · 통신기술 · 일반토목	1	1				
	행정 · 공업	일반행정 · 원자력	1	1				

	행정 · 시설 · 해양수산	일반행정 · 일반토목 · 일반수산	1	1				
	행정 · 공업 · 해양수산	일반행정 · 자원 · 일반수산	1	1				
	행정 · 시설 · 학예연구	일반행정 · 건축 · 학예연구	1	1				
	행정 · 공업 · 환경	일반행정 · 일반전기 · 일반화공 · 환경	1	1				
	행정 · 공업 · 농업	일반행정 · 일반기계 · 일반농업	1	1				
	농업 · 농업연구	일반농업 · 잠업곤충	1	1				
	행정 · 농업 · 농촌지도	일반행정 · 일반농업 · 농업	1	1				
	농업 · 농업연구 · 수의연구	축산 · 축산 · 수의	1	1				
	수의 · 수의연구	수의 · 수의	4	4				
	농업 · 수의 · 수의연구	축산 · 수의 · 수의	4	4				
	해양수산 · 해양수산연구	일반수산 · 수산양식	4	4				
	해양수산 · 어촌지도	일반수산 · 어촌	9	9				
	녹지 · 녹지연구	산림자원 · 임업	2	2				
6급	소 계		676	639			37	
	행 정	일반행정	287	263			24	
	세 무	지방세	9	9				
	전 산	전 산	14	13			1	
	사회복지	사회복지	6	6				
	사 서	사 서	2	2				
	공 업	일반기계	15	15				
	공 업	일반전기	7	7				
	공 업	일반화공	1	1				
	공 업	일반전기 · 일반화공 · 자원	1	1				
	공 업	일반기계 · 일반화공	1	1				
	공 업	일반전기 · 일반기계	1	1				
	농 업	일반농업	22	21			1	
	녹 지	산림자원	14	14				
	농 업	축 산	2	2				
	수 의	수 의	20	20				
	간 호	간 호	2	2				
	보 건	보 건	4	4				
	환 경	일반환경	12	12				
	해양수산	일반선박	3	3				
	해양수산	일반수산	15	15				
	속 기	속 기	3				3	

	행정 · 농업	일반행정 · 일반농업	1	1				
	행정 · 해양수산	일반행정 · 해양수산	2	1			1	
	시 설	일반토목	41	41				
	시 설	도시계획	1	1				
	시 설	건 축	16	16				
	시 설	지 적	9	9				
	시 설	일반토목 · 건축	4	4				
	방송통신	통신기술	5	5				
	방송통신	전자통신기술	1	1				
	식 품 위 생	식품위생	1	1				
	행정 · 전산	일반행정 · 전산	4	4				
	행정 · 환경	행정 · 일반환경	2	2				
	행정 · 공업	일반행정 · 일반기계	4	4				
	행정 · 공업	일반행정 · 일반화공	1	1				
	행정 · 보건	행정 · 보건	2	2				
	행정 · 보건 · 사회복지	행정 · 보건 · 사회복지	1	1				
	행정 · 사회복지	일반행정 · 사회복지	5	5				
	행정 · 공업	일반행정 · 일반전기	1	1				
	행정 · 공업	일반행정 · 일반전기 · 일반기계	2	1			1	
	행정 · 학예연구사	일반행정 · 학예일반	1	1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일반행정 · 사회복지 · 일반환경	1				1	
	행정 · 시설	일반행정 · 건축	3	2			1	
	행정 · 세무	행정 · 지방세	1	1				
	행정 · 사서	일반행정 · 사서	1	1				
	시 설	일반토목 · 도시계획	4	4				
	전산 · 방송통신	전산 · 통신기술	1	1				
	공업 · 방송통신	일반전기 · 전자통신기술	1	1				
	공업 · 환경	일반기계 · 일반환경	1	1				
	공업 · 농업	일반기계 · 일반농업	1	1				
	방송통신	통신기술 · 전자통신기술	5	5				
	공업 · 환경	일반화공 · 일반환경	3	3				
	환경 · 시설	일반환경 · 일반토목	2	2				
	약무 · 보건	약무 · 보건	4	4				
	보건 · 간호	보건 · 간호	7	7				
	보건 · 사회복지	보건 · 사회복지	1	1				
	보건 · 의료기술	보건 · 의료기술	3	3				

	보건·식품위생	보건·식품위생	3	3				
	보건·간호·의료기술	보건·간호·의료기술	2	2				
	시설·공업	건축·전기	1	1				
	행정·시설	일반행정·일반토목	4	2			2	
	행정·시설	일반행정·일반토목·디자인	1	1				
	농업·녹지	일반농업·산림자원	1	1				
	농업·수의	축산·수의	9	9				
	농업·농업연구	일반농업·농업경영	2	2				
	농업·농업연구	축산·축산	1	1				
	수의·수의연구	수의·수의	4	4				
	농업·수의·수의연구	축산·수의·수의	1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일반수산·수산양식	2	2				
	해양수산·어촌지도	일반수산·어촌	28	28				
	운 전	운 전	10	8			2	
	방송통신	통신사	2	2				
	행정·녹지	일반행정·산림자원	1	1				
	해양수산	선박항해	10	10				
	해양수산	선박기관	10	10				
	기계운영	기계운영						
7급	소 계		717	651			66	
	행 정	일반행정	281	227			54	
	행 정	국제통상	2	2				
	세 무	지방세	4	4				
	전 산	전 산	17	15			2	
	사회복지	사회복지	4	4				
	공 업	일반기계	19	19				
	공 업	일반전기	10	10				
	공 업	일반화공	2	2				
	공 업	자 원						
	농 업	일반농업	16	16				
	녹 지	산림자원	18	18				
	농 업	축 산	1	1				
	수 의	수 의	47	47				
	농업·수의	축산·수의	5	5				
	간 호	간 호	1	1				
	보 건	보 건	10	10				

	환 경	일반환경	8	8				
	해양수산	일반선박	3	3				
	해양수산	일반수산	13	13				
	시 설	일반토목	47	47				
	시 설	일반토목·도시계획	2	2				
	시 설	건 축	17	17				
	시 설	지 적	8	8				
	시 설	디자인	1	1				
	방송통신	통신기술	6	6				
	방송통신	전자통신기술	1	1				
	속 기	속 기	4				4	
	전산·방송통신	전산·통신기술	1	1				
	전산·방송통신	전산·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1	1				
	행정·전산	일반행정·전산	4	4				
	행정·공업	일반행정·일반기계	1	1				
	행정·공업	일반행정·일반화공	1	1				
	행정·공업	일반행정·일반전기·일반기계	1	1				
	행정·사회복지	행정·사회복지	12	12				
7급	행정·환경	행정·일반환경	2	2				
	행정·시설	행정·일반토목	3	2			1	
	행정·시설	일반행정·일반토목·디자인	1	1				
	행정·시설	행정·지적	1	1				
	행정·보건	행정·보건	1	1				
	행정·세무	행정·지방세	1	1				
	행정·녹지	일반행정·산림자원	1	1				
	행정·해양수산	일반행정·일반수산	2	2				
	행정·농업·해양수산	일반행정·일반농업·일반수산	1				1	
	행정·보건·녹지	일반행정·보건·녹지	1				1	
	행정·시설	일반행정·건축·일반토목	1	1				
	공업·환경	일반화공·일반환경	2	2				
	보건·환경	보건·일반환경	1	1				
	사 서	사 서	5	5				
	보건·간호	보건·간호	8	8				
	보건·의료기술	보건·의료기술	7	7				
	보건·약무	보건·약무	1	1				
	방송통신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3	3				

	환경 · 시설	환경 · 일반토목	2	2				
	행정 · 공업	일반행정 · 원자력	1	1				
	시 설	일반토목 · 건축	3	3				
	행정 · 방재안전	일반행정 · 방재안전	3	3				
	시설 · 방재안전	일반토목 · 방재안전	1	1				
	시설 · 방재안전	일반토목 · 건축 · 방재안전	2	2				
	행정 · 시설 · 방재안전	일반행정 · 일반토목 · 방재안전	1	1				
	시설 · 녹지	일반토목 · 산림자원	1	1				
	시설 · 공업	일반토목 · 일반기계	1	1				
	시설 · 공업	건축 · 일반기계	1	1				
	해양수산 · 환경	일반수산 · 일반환경	1	1				
	보건 · 식품위생	보건 · 식품위생	2	2				
	시설 · 세무	지적 · 지방세						
	공 업	일반기계 · 자원	1	1				
	공 업	일반기계 · 일반화공	1	1				
	해양수산 · 해양수산연구	일반수산 · 수산양식	1	1				
	해양수산 · 해양수산연구	일반수산 · 해양환경	1	1				
	해양수산 · 해양수산연구	일반수산 · 수산가공	1	1				
	해양수산 · 어촌지도	일반수산 · 어촌	14	14				
	운 전	운 전	21	19			2	
	통신운영	통신운영	2	1			1	
	기계운영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열관리운영						
	해양수산	선박항해	22	22				
	해양수산	선박기관	12	12				
	방송통신	통신사	1	1				
	사무운영	워드운영	6	6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1	1				
	선박기관운영	선박기관운영						
	전기운영	전기운영	1	1				
	토목운영	토목운영						
	농림운영	영림운영						
	보건운영	보건운영						
	소 계		83	81			2	
	행 정	일반행정	23	23				
	환 경	일반환경						

8급	사 서	사 서	5	5				
	농 업	일반농업						
	해양수산·어촌지도	일반수산·어촌	6	6				
	시 설	건 축	1	1				
	시 설	토 목	5	5				
	시 설	디자인						
	방송통신	통신기술	1	1				
	속 기	속 기	1				1	
	운 전	운 전	16	16				
	공 업	일반기계	3	2			1	
	통신운영	통신운영						
	위 생	사 역	1	1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해양수산	선박항해	3	3				
	해양수산	선박기관						
	농림운영	영림운영						
	사무운영	워드운영	12	12				
	사무운영	전산운영						
	사무운영	사무운영·사서운영	1	1				
	공 업	일반전기	2	2				
	공 업	농업기계	1	1				
	공 업	기계운전	1	1				
	기계운영	기계운영	1	1				
9급	소 계		22	21			1	
	행 정	일반행정	6	6				
	속 기	속 기	1				1	
	운 전	운 전	2	2				
	공 업	일반전기	1	1				
	공 업	일반기계	5	5				
	사무운영	워드운영	6	6				
	사무운영	전산운영						
	기계운영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해양수산	선박기관						
	농림운영	영림운영						
	전기운영	전기운영						

전 문 경력관	소 계		15	15				
	가 군		5	5				
	인사평정관리원		1	1				
	시청각기자재관리원		1	1				
	홍보관리원		2	2				
	비상계획원		1	1				
	나 군		10	10				
	홍보관리원		1	1				
	화생방관리원		1	1				
	통계조사관리원		1	1				
	인사통계관리원		1	1				
	정원통계관리원		1	1				
	체육지도사		1	1				
	농기계교육교관		2	2				
	농업인고충상담원		1	1				
	도로시설관리원		1	1				
연 구 직 계			277	277				
연구관	소 계		39	39				
	농 업 연 구	작 물	3	3				
	농 업 연 구	농업환경	3	3				
	농 업 연 구	농업경영	2	2				
	농 업 연 구	원 예	6	6				
	농 업 연 구	농식품개발	1	1				
	농 업 연 구	잠업곤충	2	2				
	보 건 연 구	공중보건	6	6				
	보건연구·환경연구	공중보건·환경	4	4				
	환 경 연 구	환 경	7	7				
	녹지연구	임 업	1	1				
	학예연구	학예일반	2	2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수산양식	2	2				
연구사	소 계		238	238				
	농 업 연 구	작 물	10	10				
	농 업 연 구	농업환경	13	13				
	농 업 연 구	농업경영	7	7				
	농 업 연 구	원 예	20	20				

	농 업 연 구	생명유전	1	1				
	농 업 연 구	잠업곤충	5	5				
	농 업 연 구	축 산	2	2				
	농 업 연 구	농 공	3	3				
	농 업 연 구	농식품개발	6	6				
	보 건 연 구	공중보건	35	35				
	환 경 연 구	환 경	50	50				
	보건연구·환경연구	공중보건·환경						
	녹지연구	임 업	9	9				
	수의연구	수 의	11	11				
	농업연구·수의연구	축산·수의	4	4				
	학 예 연 구	학예일반	11	11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수산양식	11	11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25	25				
	해양수산연구	수산가공	12	12				
	녹지연구·환경연구	임업·환경	1	1				
	기록물연구	기록물	2	2				
지 도 직 계			30	30				
지도관	소 계		7	7				
	농 촌 지 도	농업·농촌생활	2	2				
	농 촌 지 도	농촌생활	3	3				
	농업연구·농촌지도	농업경영·농업	1	1				
	농업연구·농촌지도	농업경영·농업·농촌생활	1	1				
지도사	소 계		23	23				
	농 촌 지 도	농 업	17	17				
	농 촌 지 도	농촌생활	3	3				
	어 촌 지 도	어 촌	3	3				
소 방 직 계			4,507		4,507			
소방직	소 계		4,507		4,507			
	소 방 정		29		29			
	소 방 령		111		111			
	소방령·통신5급(통신기술)							
	소 방 경		320		320			
	소 방 위		444		444			
	소 방 장		737		737			

	소 방 교	1,207		1,207			
	소 방 사	1,659		1,659			
교 원 계		61			61		
교원	소 계	61			61		
	총 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	45			45		
	조 교	15			15		

[별표5]

도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 제5항 관련】

기관별			합 계	총무 담당관	의사 담당관	정책 담당관	홍보 담당관	상임위 전문 위원실	비고
직급별	직렬별	직류별							
총 계			139	23	19	17	10	70	
별정직 계			8	2				6	
4급 상당	소 계		6					6	
	행정·별정		4					4	
	행정·기술(농업·수산·축산·수의)·별정		1					1	
	행정·기술(기계·전기·화공·자원·토목·건축·지적)·별정		1					1	
5급 상당	소 계								
	행정·별정(비서관)								
6급 상당	소 계		1	1					
	비서원		1	1					
7급 상당	소 계		1	1					
	비서원		1	1					
일반직 계			131	21	19	17	10	64	
2급 ~ 3급			1	1					
4 급	소 계		6	2	1	1	1	1	
	행 정	일반행정	6	2	1	1	1	1	
5 급	소 계		18	3	3	3	2	7	
	행 정	일반행정	16	3	3	3	2	5	
	행정·농업	일반행정·일반농업	1					1	
	행정·시설	일반행정·토목	1					1	
6 급	소 계		37	7	6	9	2	13	
	행 정	일반행정	24	4	2	9	2	7	
	전 산	전 산	1		1				
	속 기	속 기	3		3				
	행정·시설	일반행정·건축	1	1					
	행정·공업	일반행정·일반기계·일반전기	1					1	
	행정·사회복지·환경	일반행정·사회복지·일반환경	1					1	
	농 업	일반농업	1					1	
	행정·해양수산	일반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일반행정·일반토목	2					2	
	운 전	운 전	2	2					

7 급	소 계		66	8	7	4	4	43	
	행 정	일반행정	54	6	3	4	1	40	
	행정·농업·해양수산	일반행정·일반농업·일반수산	1					1	
	행정·보건·녹지	일반행정·보건·녹지	1					1	
	행정·시설	일반행정·일반토목	1					1	
	전 산	전 산	2				2		
	속 기	속 기	4		4				
	운 전	운 전	2	2					
	통신운영	통신운영	1				1		
8급	소 계		2		1		1		
	속 기	속 기	1		1				
	운 전	운 전							
	공 업	일반기계	1				1		
9급	소 계		1		1				
	행 정	일반행정							
	속 기	속 기	1		1				
	공 업	일반기계							

전라남도 고시 제2022-455호

채종임분 지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채종임분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1. 지정사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2. 고시 내역

구분	소재지	지정 연월일	수종	본수	소유자	비고
채종임분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0-1	'22. 10. 5.	붉가시나무	1,000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산41-1	'22. 10. 5.	붉가시나무	50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산132-1	'22. 10. 5.	붉가시나무	500	전라남도	

3. 지정일자 : 2022. 10. 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산림보전과(☎061-286-7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22-459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법 인 명 (대 표 자)	등록번호	산림사업의 종 류	등 록 연월일	소 재 지
유한회사 금강임업 (이*균)	① 전남2022-053 ② 전남2022-054	①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②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22. 10. 5.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2-461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법 인 명 (대 표 자)	등록번호	산림사업의 종 류	등 록 연월일	소 재 지
유한회사 가련 (진*일)	① 전남2022-055 ② 전남2022-056	①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②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22. 10. 6.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고시 제2022-464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법 인 명	대표자	산림사업의 종 류	등록번호	소 재 지	등 록 취소일자	등록취소 사 유
㈜드림조경	박*정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전남2021-001	전남 여수시	' 22.10.12.	폐업

전라남도 고시 제2022-466호

함평 금석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함평 금석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내용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목적: 평야부 우량농지 중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시설계량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2. 사업의 내용(변경)
   - ❍ 사 업 명: 함평 금석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 ❍ 위　　치: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외 1개 리 일원
   - ❍ 수혜면적: 224.0ha
   - ❍ 사업내용
     - ·(당초) 용수로 6조 L= 1,623m, 배수로 20조 L= 7,722m, 농로 13조 L= 7,162m, 부대공사 등
     - ·(변경) 용수로 7조 L= 1,663m, 배수로 20조 L= 7,722m, 농로 13조 L= 7,362m, 부대공사 등
   - ❍ 사 업 비
     - ·(당초) 5,270백만 원(국비 100, 도비 4,373.7, 군비 796.3)
     - ·(변경) 5,320백만 원(국비 100, 도비 4,373.7, 군비 828.3)
   - ❍ 사업기간: 2020. 2. 7. ~ 2022. 12. 10.
   - ❍ 시 행 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3. 변경사유: 물가변동 조정금액 및 사업량 조정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변경 등
4. 사업의 효과: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 경쟁력 제고
5. 관련 서류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061-320-5251)
6. 지구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해당없음

사업계획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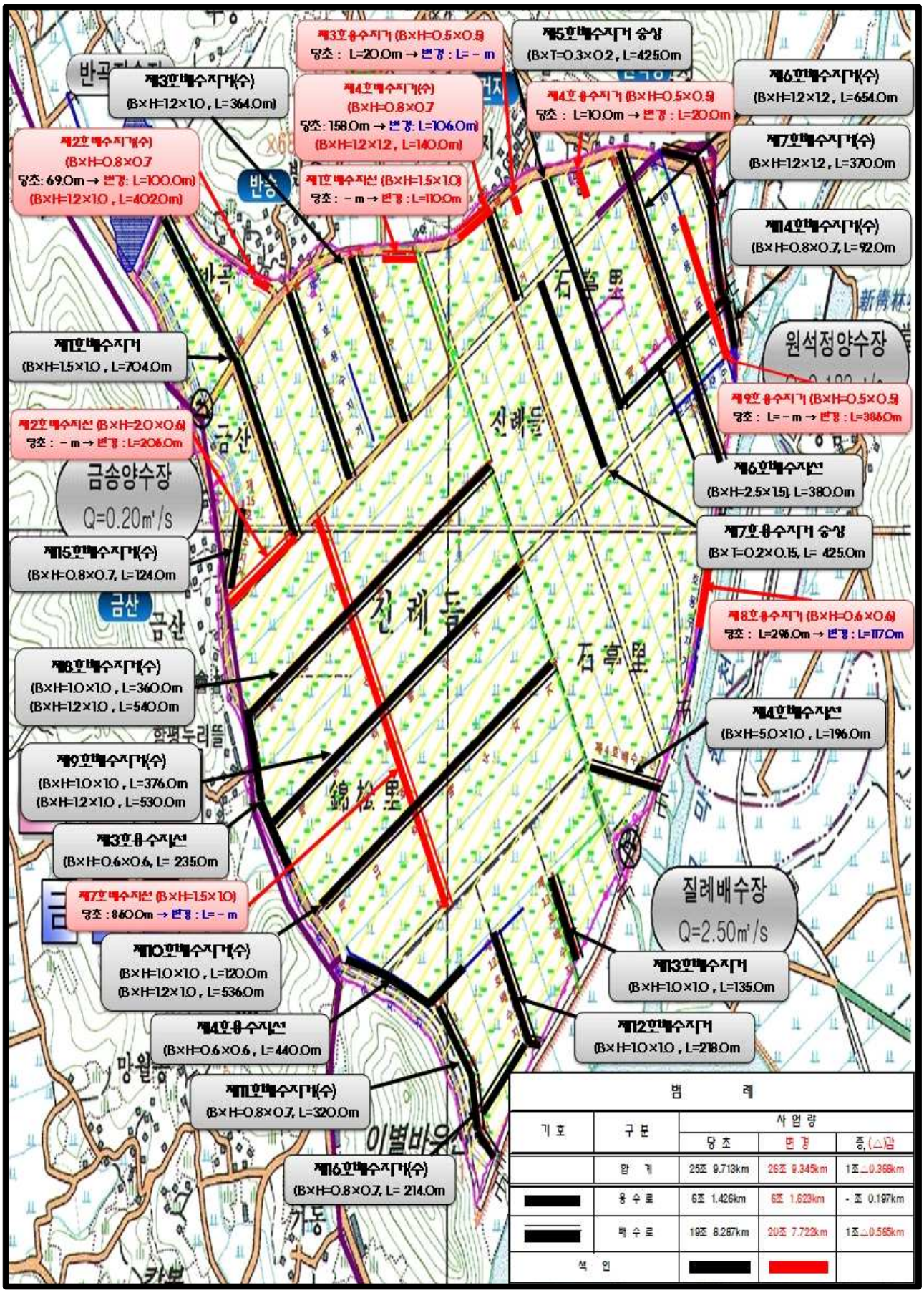

범 례				
기 호	구 분	사 업 량		
		당 초	변 경	증,(△)감
	합 계	25조 9.713km	26조 9.345km	1조△0.368km
	용 수 로	6조 1.426km	6조 1.623km	- 조 0.197km
	배 수 로	19조 8.287km	20조 7.722km	1조△0.565km
색 인				

전라남도 공고 제2022-1087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다음과 같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구분	등록분야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취소 내역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록취소	수질 (제94호)	㈜우리종합기술 (윤지현)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길 11-10	2022.10.05.	자진반납

전라남도 공고 제2022-1108호

전라남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를 위반하여 도유지 내 폐기물을 적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1. 공 고 명 : 영산호 관광지 내 도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0. 13. ~ 10. 27.(15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점유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처분의 제목 : 행정대집행
5.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미상
6.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 화단 조성 및 화분 등 무단 적치물
   - 소재지 :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산2-1번지
   - 무단점유물 : 화단 조성 및 화분 등 무단 적치물
   ❍ 처분내용 : 행정대집행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산2-1번지 도유지 내 무단 조성된 화단 및 화분 등 무단적치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적치물 제거토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관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대집행 함을「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무단점유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 및「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팀(☎061-462-27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유물 사진 및 위치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전라남도 공고 제2022 -1108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미상

2022년 9월 15일, 전라남도 공고 제2022-1012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무단 점유물(화단 조성 및 화분 등 무단적치물)을 2022년 10월 7일까지 원상복구 및 적치물 제거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관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2년 10월 28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행정주사 시설주사보	김기성 배민아	금 원 (소요비용 추후 부과)

2022년 10월 13일

전 라 남 도 농 업 박 물 관 장

210㎜×297㎜[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직위/성명 : 지방행정주사 김기성, 지방시설주사보 배민아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사람은 2022년 10월 13일, 전라남도 공고 제2022 -1108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위 사람은 귀하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3항에 따라 대집행을 할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전 라 남 도 농 업 박 물 관 장

210㎜×297㎜[백상지 80g/㎡]

전라남도 공고 제2022-1109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구분	등록분야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실험실소재지)	등록말소 내역	
				말소일자	말소사유
등록말소	수질 (제27호)	㈜후소엔지니어링 (이경섭)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회로 339 (전남 함평군 해보면 해보농공길 18)	2022.10.11.	자진반납

전라남도 공고 제2022-1110호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 10. 13.

전라남도지사

1. 특구 개요
   가. 명칭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나.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신안군, 목포시 일원
      * 특구실증구간 :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일원, 영광읍 시가지, 영광군 백수읍법성면 자전거 전용도로 일원, 불갑사 관광지 및 수변공원 일원, 목포시 용당동 자전거 전용도로 일원, 목포사신안군 자동차전용도로 및 압해대교 일원
   다. 면적 : 약 2,729㎢, 37.6km
   라. 지정기간 : 2019. 8. 9. ~ 2023. 8. 8.(4년)
      * 실증특례 유효 기간 : 2019. 8. 9. ~ 2023. 8. 8.(4년)
   마. 지정목적 : e-모빌리티 규제개선을 통한 관련산업 육성으로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e-모빌리티산업 중심도시 도약
2.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열람
   가. 열람기간 : 2022. 10. 13.(목) ~ 11. 11.(금) / 30일간
      (09:00~18:0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나. 열람장소 :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
   다. 방법 : 비치된 계획(안) 방문 열람 * 전자파일, 복사본 제공 불가
3.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 내용
   ❍ 지정변경 현황 : 실증특례 해지(1건)

특구	구분	당초	변경	변경 사유
e-모빌리티	실증 특례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특례 허용	동일	-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장치 설치 실증특례 허용	동일	-
		(농업용 동력운반차) ①최소 적재정량 제한 완화(200→100Kg이상) 실증특례 허용 ②1회 충전 연속운전 제한 완화	동일	-

특구	구분	당초	변경	변경 사유
	실증 특례 해지	(전기자전거) 모터정격출력 제한(350w이하) 완화	모터정격출력 제한(500w이하) 완화 법령 개정 * 생활용품안전기준, 개정(5.31) / 시행 '22.12.1.	법령 정비 완료에 따른 실증 종료

【변경사유】

- 전기자전거 모터정격출력 제한(350w이하) 완화 특례허용 규제법령 정비 완료(생활용품안전기준, 개정 '22.5.31)에 따른 실증 종료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0035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이륜자전거 제3부 전기자전거 부속서 40"

현 행	개정안
4. 안전요구사항 4.2.2 모터 출력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 출력은 350W 이하이어야 한다.	4. 안전요구사항 4.2.2 모터 출력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 출력은 500W이하이어야 한다.

- 사유: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특구사업('19.8~' 21.11)의 실증특례 결과, 모터출력 상향 개정시(350W→500W) 속도제한(25㎞/h)으로 주행안전에 대한 안전성이 실증되었고, 한국의 지형특성상 고개길, 구릉지역 등을 고려할 때 고출력 전기자전거의 필요성이 있어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4. 기타사항

가.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서면 또는 온라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22. 11. 11.(금) 18:00까지 (마감시한 도착분까지 유효)

다. 제 출 처

❍ 서면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신성장산업과

❍ 이메일 : treeoyk@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061-286-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의견서			
주 소			
성 명		연락처	

상기와 같이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 .

제출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위와 같이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목포시 공고 제2022-1643호

목포 도시계획시설(목포해양대/해사과학관 강의동)사업 공사완료 공고

1. 도시계획시설(목포해양대학교)사업【사업명 : 해사과학관 강의동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 10. 13.

목포시장

■ 공사완료 공고 내용

구분 / 항목	공 고 내 용	비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죽교동 701번지 외 2필지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목포해양대)사업 ○ 사업명칭 : 해사과학관 강의동 신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대지면적 : 291,973.5㎡ ○ 금회사업 : 목포해양대학교 해사과학관 강의동 (지상 5층, 1개동/ 건축면적 2,884.25㎡, 연면적 8,684.20㎡)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목포시 목포해양대학로 91(죽교동) ○ 성 명 :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5. 사업 착수 및 준공일	○ 사업 착수일 : 2019. 3. 28. ○ 사업 준공일 : 2022. 7.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아래 참조	
7. 준공도서	○ 관계도서 : 게재생략 (목포시 양을로 203, 도시계획과 비치)	
8. 기타 문의	○ 문의전화 : 061- 270- 3447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 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 명	
합 계				328,479.2	291,973.5					
1	죽교	465-176	도	1,261	10	국	기획재정부			
2	죽교	465-194	임	673	235	공	목포시			
3	죽교	465-195	임	358	67	공	목포시			
4	죽교	498-10	임	60	60	국	교육부			
5	죽교	498-109	임	388	117	국	기획재정부			
6	죽교	498-110	도	720	197	국	기획재정부			
7	죽교	562-38	학	71	71	국	교육부			
8	죽교	562-75	전	12	12	국	기획재정부			
9	죽교	562-81	전	1,344	897	국	교육부			
10	죽교	562-84	대	990	990	국	교육부			
11	죽교	562-93	전	16	16	국	교육부			
12	죽교	562-96	전	271	271	국	교육부			
13	죽교	571	학	100,089	100,063	국	교육부			
14	죽교	571-102	학	120	119	국	교육부			
15	죽교	571-100	학	40,561.3	38,525.9	국	교육부			
16	죽교	571-89	도	1,479	1,479	공	목포시			
17	죽교	571-92	잡	3,163	3,057	국	해양수산부			
18	죽교	571-98	잡	1,097	1,097	국	해양수산부			
19	죽교	571-99	잡	3,224.8	3,209	국	교육부			
20	죽교	665-2	도	136	136	국	기획재정부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 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 명	
21	죽교	666	도	253	61	국	국토교통부			
22	죽교	666-1	도	1,625	28	국	국토교통부			
23	죽교	666-2	도	11	8	국	기획재정부			
24	죽교	667	도	2,162	531	국	국토교통부			
25	죽교	산30-14	임	5,292	776	국	기획재정부			
26	죽교	701	잡	124,333.7	109,419.1	국	교육부			
27	죽교	702	유	36,487.4	28,090.4	국	교육부			
28	죽교	공유 수면		-	2,103.1					
29	죽교	571-87	학	2,281	328	국	해양경찰청			

나주시 고시 제2022-163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41-4번지 일원 “빛가람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 및 녹지 조성 공사” 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의 분할측량 결과 반영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2. 10. 13.

나주시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4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 명 칭: 빛가람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 및 녹지 조성 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
   ○ 도 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형태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876	16,756	16,783		
대로	3	1	25	87	2,368	2,165	일반도로	
중로	1	1	20	380	5,550	8,583	일반도로	
중로	2	1	15	371	5,532	5,782	일반도로	
소로	3	1	6	38	306	253	일반도로	

   ○ 녹 지

시설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합 계		19,560	19,557
경관녹지1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77-6번지 일원	5,354	5,351
경관녹지2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74-17번지 일원	14,206	14,206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빛가람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박대룡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516-1번지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 수 일 : 2020. 12. 3.(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기정 2022. 7. 31. / 변경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변경) : 다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 세부내용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등: 관리청에 무상귀속
   ❍ 기존 공공시설 등: 시행자가 관리청과 협의 무상귀속하거나 협의매수
8. 인가조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9. 변경사유: 분할측량 결과 반영, 오기 및 누락사항 정정, 준공예정일 연장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도시과(☎061-339-8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 토지(금천면 석전리 공동주택 기반시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비고
1	금천면 석전리	341-9	도	60	60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2	금천면 석전리	378-13	도	42	42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3	금천면 석전리	379-50	도	3	3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4	금천면 석전리	산62-10	도	8	8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5	금천면 석전리	산62-11	임	36	36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6	금천면 석전리	산62-13	임	38	38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7	금천면 석전리	378-10	도	1	1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8	금천면 석전리	378-11	도	4	4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9	금천면 석전리	378-12	대	42	42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10	금천면 석전리	378-14	대	24	24	국유지(건설교통부)	-	누락 추가
11	금천면 석전리	378-8	대	6	6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12	금천면 석전리	376-8	대	119	119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13	금천면 석전리	376-34	대	99	99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14	금천면 석전리	376-35	과	65	65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15	금천면 석전리	376-36	도	505	505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16	금천면 석전리	산67-2	임	1,406	1,406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17	금천면 석전리	산67-6	임	1,074	1074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18	금천면 석전리	산67-5	도	868	854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19	금천면 석전리	378-3	대	29	29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20	금천면 석전리	379-45	과	68	68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21	금천면 석전리	산62-9	임	91	91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22	금천면 석전리	379-44	과	241	241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23	금천면 석전리	379-48	잡	447	447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비고
24	금천면 석전리	379-49	잡	82	82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25	금천면 석전리	379-51	잡	416	416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26	금천면 석전리	379-10	도	426	426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27	금천면 석전리	379-47	과	75	75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28	금천면 석전리	379-46	과	67	67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29	금천면 석전리	341-58	전	535	535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30	금천면 석전리	341-8	전	40	40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31	금천면 석전리	341-56	전	476	476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32	금천면 석전리	341-7	도	714	714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33	금천면 석전리	341-3	전	1,147	398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34	금천면 석전리	341-10	도	46	46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35	금천면 석전리	341-5	전	2,291	391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36	금천면 석전리	341-25	전	476	1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37	금천면 석전리	341-34	전	119	81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38	금천면 석전리	341-11	도	96	96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39	금천면 석전리	341-16	도	30	30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40	금천면 석전리	341-4	전	3,709	2,922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41	금천면 석전리	341-17	도	268	268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42	금천면 석전리	341-22	대	139	134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43	금천면 석전리	341-33	잡	670	3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44	금천면 석전리	341-23	전	79	66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45	금천면 석전리	341	대	1,458	703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46	금천면 석전리	341-18	도	516	516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47	금천면 석전리	341-6	답	737	181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48	금천면 석전리	420-17	도	320	320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49	금천면 석전리	420-16	전	117	117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50	금천면 석전리	340-2	답	2,138	1,343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51	금천면 석전리	341-57	전	1,310	403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비고
52	금천면 석전리	341-39	잡	628	1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53	금천면 석전리	341-41	전	113	78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54	금천면 석전리	364-9	전	7,587	1,180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55	금천면 석전리	364-10	전	11,274	4,017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56	금천면 석전리	372-1	답	96	96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57	금천면 석전리	374-2	잡	2,882	1,419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58	금천면 석전리	374-21	전	304	304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59	금천면 석전리	374-3	전	1,527	290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60	금천면 석전리	374	잡	375	162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61	금천면 석전리	374-20	전	538	328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62	금천면 석전리	374-25	대	633	603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63	금천면 석전리	374-16	전	96	96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64	금천면 석전리	374-10	전	3,904	213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65	금천면 석전리	374-24	대	711	622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66	금천면 석전리	374-1	대	370	370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67	금천면 석전리	376-30	과	47	47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68	금천면 석전리	376-9	대	888	888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69	금천면 석전리	376-37	과	383	37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70	금천면 석전리	376-12	과	3,262	359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71	금천면 석전리	376-11	과	813	813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72	금천면 석전리	376-14	과	1,230	750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73	금천면 석전리	376-26	대	245	200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74	금천면 석전리	376-16	대	171	99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75	금천면 석전리	376-29	과	900	174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76	금천면 석전리	376-32	과	110	110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77	금천면 석전리	376-33	대	55	55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78	금천면 석전리	377-14	과	155	155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79	금천면 석전리	377-6	전	1,488	1,488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비고
80	금천면 석전리	376-17	대	625	380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81	금천면 석전리	341-55	전	4,328	2,898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82	금천면 석전리	341-26	전	175	175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83	금천면 석전리	341-2	전	2,255	1,821	빛가람지역주택조합	나주시 빛가람동 516-1	
계	83필지			71,941	36,340			

나주시 공고 제2022-1355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서류 열람 공고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41-4번지 일원 “빛가람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 및 녹지 조성 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22. 10. 13.

나주시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4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 명 칭: 빛가람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 및 녹지 조성 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
   ○ 도 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형태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876	881	16,783	16,824.2		확정측량 등 면적 변경
대로	3	1	25	87	92	2,165	2,323.8	일반도로	
중로	1	1	20	380	375	8,583	8,370	일반도로	
중로	2	1	15	371	376	5,782	5,889.1	일반도로	
소로	3	1	6	38	38	253	241.3	일반도로	

   ○ 녹 지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19,557	19,730.2	확정측량 등 면적 변경
경관녹지1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77-6번지 일원	5,351	5,351.7	
경관녹지2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74-17번지 일원	14,206	14,378.5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빛가람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박대룡
   ❍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516-1번지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2020. 12. 3.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7. 실시계획 관계도서: 게재생략(나주시 도시과 비치)
8. 열람기간: 2022. 10. 13. ~ 2022. 10. 26.
9.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나주시 도시과: ☎ 061-339-8973 / Fax 061-339-2826

고흥군 고시 제2022-123호

고흥 군관리계획(궤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고흥 미르마루길 모노레일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10. 13.

고흥군수

1. 고흥 군관리계획(궤도)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궤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1	궤도	영남면 남열리 77-8공	- (공유 수면)	-	2,111	12,992	-	폭원 5.5~25m

■ 궤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궤도	• 신설 - 위치 : 영남면 남열리 77-8번지 일원 - 연장 : 2,111m - 면적 : 12,992㎡ - 폭원 : 5.5 ~ 25m	• 미르마루길 모노레일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수요를 충족하고 고흥군 지역발전향상에 기여코자 군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함

2. 고흥 군관리계획(궤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고흥군청 건설과 및 미래산업과(061-830-5432,52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흥군 고시 제2022-124호

고흥 군계획시설(가축시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725-4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가축시장)사업에 대하여「국토계획법」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관계도서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13.

고흥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725-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고흥 군계획시설(가축시장) 사업
   ○ 명 칭 : 고흥축협 가축시장 조성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
   ○ 사업면적
   - 당초 : 8,979㎡ 변경 : 8,965㎡
   ○ 사업규모 : 가축시장(8,96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고흥축산업협동조합
   ○ 주 소 : 고흥군 고흥읍 봉동주공길 44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 예정일 : 2022. 12. 31.
6. 관계도서 열람장소 : 게재 생략(고흥군청 건설과에 비치)
7.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건설과(☎061-830-5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합 계				8,965	8,965						
1	동강면 한천리	725-4	답	6,037	6,037	고흥축산업 협동조합	고흥군 고흥읍 봉동주공길 44				
2	동강면 한천리	726-1	답	2,928	2,928	고흥축산업 협동조합	고흥군 고흥읍 봉동주공길 44				

강진군 고시 제2022-156호

수양소하천 개선복구사업 편입토지 등 물건 세목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수양소하천 개선복구사업 편입토지 등 물건 세목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13.

강진군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수양천	수양소하천 개선복구사업	강진군 신전면 수양리 741-2	강진군 신전면 수양리 693-3	440m	440m	교량 3개소	2022.7.	2023.12.	재난복구	토지 보상 등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 시행계획 세부내역

1. 하천공사의 명칭 : 수양소하천 개선복구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본 과업은 신전면 수양리 일원의 소하천을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하여 인근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로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며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로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하천공사의 개요
   ○ 사업량 : 하천개수(호안정비) L=440m, 교량 3개소 등
   ○ 사업비 : 1,497백만원
   ○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수양리 741-2 ~ 수양리 693-3 일원
3.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강진군수(안전재난교통과장)
   ○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번지

4. 소하천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2. 7. ~ 2023. 12.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6. 편입토지 세목(변경) 사유 : 민원으로 인한 재분할 측량으로 편입면적 변경
7. 위 치 도

8.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강진군수(안전재난교통과장)
9.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10. 실시설계도서 : 별첨 설계도서 참조
11.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12.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백만원)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1,497	1,497	-	-	

13. 기타사항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청 안전재난교통과 재난방재팀(☎ 061-430-39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권리자		관계인		권리 관계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수양리	741-2 (741)	대	446	256	강진군 신전면	오*례				
2	수양리	991-42	하천	39,632	5,850		건설부				
3	수양리	740-4 (740-1)	전	2,033	349	광주 서구	윤*임				
4	수양리	740-3	도로	53	53	강진군 도암면	윤*준				
5	수양리	723-5 (723-2)	도로	195	27		윤*철				
6	수양리	740-2	전	13	13	광주광역시 서구	윤*임				
7	수양리	723-6 (723-1)	전	1,352	145		윤*철				당초342㎡
8	수양리	722-8 (722-2)	전	1,118	88	강진군 신전면	윤*하				당초175㎡
9	수양리	722-6 (722)	대	660	30	강진군 신전면	윤*하	도암면 도암중앙로 85	도암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당초79㎡
10	수양리	722-7 (722-1)	전	153	19	강진군 신전면	윤*하				당초50㎡
11	수양리	669-1 (669)	답	704	123	강진군 신전면	윤*하				
12	수양리	670-4 (670-1)	전	1,167	70	강진군 신전면	윤*하				
13	수양리	721-4 (721)	전	2,436	159	강진군 신전면	김*자				당초299㎡
14	수양리	1008	도로	660	54		건설 교통부				
15	수양리	697-23 (697)	전	1,306	44	강진군 신전면	신*균				
16	수양리	670-5 (670-2)	도로	89	8	강진군 신전면	윤*하	도암면 도암중앙로 85	도암농업 협동조합	가압류	
17	수양리	697-24 (697-13)	도로	291	170	강진군 신전면	고*춘				
18	수양리	697-14	도로	63	63	강진군 신전면	고*춘				
19	수양리	545-8 (545-6)	답	3,217	2	강진군 신전면	윤*하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권리자		관계인		권리 관계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0	수양리	545-9 (545-7)	답	3,180	10	강진군 신전면	윤*하				
21	수양리	692-1	전	162	162	강진군 강진읍	최*태				
22	수양리	692-2	도로	56	56	강진군 신전면	윤*하				
23	수양리	693-2	도로	33	33		윤*호				
24	수양리	693-3 (693-1)	대	132	4		윤*호				

지장물조서

번호	위치	지장물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소유자	
							성명	주소
1	수양리	991-42 (647-2지선)	축사	강파이프및조적조비닐지붕	110	㎡		
			가추	강파이프 강판지붕	19	㎡		
			담장	조적조	11	㎡		
			정화조 이설비	기정용	1	식		
			오동나무	-	1	주		
			복숭아나무	-	2	주		
			엄나무	-	3	주		
			동백나무	-	1	주		
			두릅나무	-	1	주		
			축산보상	휴업4개월(소:2두 개:15두)	1	식		
2	수양리	991-42	매실나무	-	2	주		
3	수양리	740-1	창고용 하우스	강파이프 비닐	120	㎡		
			동산이전비	-	1	식		
4	수양리	991-42 (654-1지선)	비파나무	-	1	주		
			밤나무	-	2	주		
			두릅나무	-	13	주		
			꾸지뽕나무	-	1	주		
			매실나무	-	1	주		
			감나무	-	1	주		
			젬피나무	-	1	주		
			오가피	-	8	주		
			도라지	-	12	㎡		
5	수양리	722 722-1	아로니아	-	24	군		
			동백나무1	-	14	주		
			동백묘목	-	1	주		
			석류나무	-	1	주		
			동백나무2	-	6	주		
			감나무	-	2	주		

번호	위치	지장물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소유자	
							성명	주소
			매실나무	-	1	주		
6	수양리	721	하우스	강파이프 비닐	61	㎡		
			뽕나무	-	1	주		
			엄나무	-	19	주		
			옻나무	-	1	주		
			감나무	-	4	주		
			헛개나무	-	3	주		
			꾸지뽕나무	-	1	주		
			대추나무	-	1	주		
			더덕	-	16	㎡		
			도라지	-	12	㎡		
7	수양리	991-42	매실나무	-	1	주		
8	수양리	991-42	매실나무	-	6	주		
9	수양리	991-42	감나무	-	1	주		
			대추나무	-	2	주		
10	수양리	991-42 (663-1지선)	감나무	-	6	주		
			마가목	-	1	주		
			동백나무	-	6	주		
			자두나무	-	1	주		
			두릅나무	-	5	주		
			옻나무	-	1	주		
			사철나무	-	2	주		
			종려나무	-	1	주		
			밤나무	-	1	주		

무안군 고시 제2022-164호

무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남악지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무안군 고시 제2020-88(2020.05.21.)호에 의하여 고시된 무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남악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무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2. 10. 13.

무안군수

1. 무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다음
2. 무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무안군청 지역개발과(061-450-5767), 문화체육과(061-450-409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무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632,589.2	-	3,632,589.2	100.0	
주거지역	소 계	1,872,790.0	-	1,872,790.0	51.5	
	제1종전용주거지역	62,319.3	-	62,319.3	1.7	
	제2종전용주거지역	39,602.4	-	39,602.4	1.1	
	제1종일반주거지역	332,054.6	-	332,054.6	9.2	
	제2종일반주거지역	146,851.6	-	146,851.6	4.0	
	제3종일반주거지역	676,252.0	-	676,252.0	18.6	
	준주거지역	615,710.1	-	615,710.1	16.9	
상업지역	소 계	508,866.4	-	508,866.4	14.0	
	중심상업지역	268,484.7	-	268,484.7	7.4	
	일반상업지역	240,381.7	-	240,381.7	6.6	
공업지역	소 계	9,370.0	-	9,370.0	0.3	
	준공업지역	9,370.0	-	9,370.0	0.3	
녹지지역	소 계	1,241,562.8	-	1,241,562.8	34.2	
	자연녹지지역	1,241,562.8	-	1,241,562.8	34.2	

나. 용도지구 · 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1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일원	3,632,589.2	-	3,632,589.2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변경)

(1)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공공 공지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97-2	16,545.2	감) 599.2	15,946	2002.11.12. (전남2002-234)	자연 녹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공공 공지	•면적감소 - 16,545.2㎡ ⇒ 15,946㎡, 감) 599.2㎡	•남악체육시설의 시설 구역계 정형화

2) 공공 · 문화체육시설(변경)

가) 체육시설(변경)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체육 시설	-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98 일원	39,866.8	증) 599.2	40,466	2002.11.12. (전남 2002-234)	자연녹지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체육 시설	•면적증가 : 39,866.8㎡ ⇒ 40,466㎡, 증) 599.2㎡	•남악체육시설의 시설 구역계 정형화

나.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타시설용지(변경)

(1) 체육시설용지(변경)

구 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위치	면적(㎡)	
변경	2	-	39,866.8	증) 599.2	40,466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98 일원	40,466	남악체육시설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무안군 공고 제2022-1089호

보상계획 공고

(무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무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13.

무안군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무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나. 사 업 량 : (매입)67,303㎡ / (조성) 35,000㎡
   다. 사업시행자 : 무안군수
   라. 사업위치 : 무안군 일로읍 용산리 1366번지 일원
   마. 사업기간 : 2020년 2월 ~ 2025년 12월
      ※ 단,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는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보상대상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체
   ※ 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및 계획변경, 기타 사유 등으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3. 보상시기 : 2022월 10월 이후(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등 감정평가 후 개별통보)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보상
   나.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같은법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다.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안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 추 천 일 : 2022. . .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 유 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 소	성 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보상액 산정⇒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

5.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2. 10. 13. ~ 2022. 10. 27. (15일간)

나. 열람장소 : 무안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50-5678)
무안군 홈페이지(http://www.muan.go.kr)

다. 이의신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무안군청(건설교통과)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

가. 본 공고 이후에 식재되는 수목, 설치하는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토지 및 지장물건 내역은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미분할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이 완료된 후 보상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의 변경, 토지 지번과 면적의 변경 및 지장물의 면적(수량), 누락 등으로 다소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50-56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시군구	읍면동	리			공부	편입	성명	주 소	권리 종류	성명	주소	
1	무안	일로	용산	1365	답	913.1	913.1	홍**	무안군 일로읍 백련로 **				
2	무안	일로	용산	1365-1	답	863.2	863.2	홍**	무안군 일로읍 백련로 **				
3	무안	일로	용산	1365-2	답	632.6	632.6	서**	신안군 지도읍 동천길 **				1/2
								오**	무안군 일로읍 삼일로 **				1/2
4	무안	일로	용산	1365-3	답	596.7	596.7	전라남도	공유지				
5	무안	일로	용산	1365-4	답	125.1	125.1	전라남도	공유지				
6	무안	일로	용산	1366	답	8,925.4	8,925.4	서**	신안군 지도읍 동천길 **				1/2
								오**	무안군 일로읍 삼일로 **	저당권	일로 ******	무안군 일로읍 일로달바위길 ****	1/2
7	무안	일로	용산	1366-2	답	2,288.0	2,288.0	서**	무안군 일로읍 용산리 ***				
8	무안	일로	용산	1366-3	답	2,330.3	2,330.3	서**	무안군 일로읍 용산리 ***				
9	무안	일로	용산	1366-4	답	1,682.2	1,682.2	한**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				
10	무안	일로	용산	1366-5	답	1,031.8	1,031.8	이**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				
11	무안	일로	용산	1366-6	답	434.4	434.4	전라남도	공유지				
12	무안	일로	용산	1367	답	5,831.5	5,831.5	김**	무안군 일로읍 용산리 ***				
13	무안	일로	용산	1367-1	답	3,508.6	3,508.6	김*식	무안군 일로읍 용산리 ***				
14	무안	일로	용산	1367-2	답	1,518.1	1,518.1	박**	무안군 일로읍 일로농장길 ***				
15	무안	일로	용산	1367-3	답	5,026.7	5,026.7	조**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				
16	무안	일로	용산	1367-4	답	3,386.2	3,386.2	김**	목포시 북항로 ***				
17	무안	일로	용산	1367-5	답	1,364.3	1,364.3	유**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				
18	무안	일로	용산	1367-6	답	2,598.9	2,598.9	임**	목포시 원형서로 ***				
								박**	경기 이천시 아리역로 ***	저당권	일로 ******	무안군 일로읍 일로달바위길 ****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시군구	읍면동	리			공부	편입	성명	주 소	권리 종류	성명	주소	
19	무안	일로	용산	1367-7	답	220.8	220.8	전라남도	공유지				
20	무안	일로	용산	1367-14	답	22.1	22.1	전라남도	공유지				
21	무안	일로	용산	1368	답	2,430.1	2,430.1	김**	무안군 일로읍 용산리 ***				
22	무안	일로	용산	1368-1	답	2,584.9	2,584.9	최**	화순군 북면 금성길 ***				
23	무안	일로	용산	1368-2	답	2,081.8	2,081.8	김**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				
24	무안	일로	용산	1368-3	답	2,932.6	2,932.6	강**	장흥군 장흥읍 장흥대로 ***				
25	무안	일로	용산	1368-4	답	1,722.2	1,722.2	김**	목포시 산정동 ***				
26	무안	일로	용산	1368-5	답	3,221.6	3,221.6	강**	목포시 텃골로 ***				
27	무안	일로	용산	1368-6	답	5,171.0	5,171.0	이**	광주 광산구 월계동 ***				
28	무안	일로	용산	1409-2	구거	557.3	557.3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				
29	무안	일로	용산	1409-3	구거	130.4	130.4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				
30	무안	일로	용산	1411	구거	511.9	511.9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				
31	무안	일로	용산	1412	구거	1,568.3	1,568.3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				
32	무안	일로	용산	1413	도로	1,091.2	1,091.2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영광군 고시 제2022-89호

영광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영광군 고시 제2017-50호로 고시된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일원의 '백수 분등 소공원 조성사업' 에 대하여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2. 10. 13.

영광군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⑧	백수 분등 소공원	백수읍 하사리 1874-7	6,537.0	-	6,537.0	2018. 4. 5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변 경 사 유
⑧	백수 분등 소공원	백수읍 하사리 1874-7	기 조성된 백수 분등 소공원의 조성현황을 반영하고, 백수읍 하사리 주민을 위한 휴양시설 설치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영광군 해양수산과(☎061-350-54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해양수산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6,537.0	6,537.0	18.2	258.2	18.2	317.9	-	
공 원 시 설			1,270.8	1,288.1	18.2	258.2	18.2	317.9	시설률 19.4%	시설률 19.7
	도로 및 광장		650.0	470.6	-	-	-	-	(9.9%)	(7.2%)
	공원관리시설	관리사무소	-	338.5	-	240.0	-	299.7	(0.0%)	(5.2%)
	휴양시설	휴게벤치 외 2종	289.0	36.0	-	-	-	-	(4.4%)	(0.6%)
	운동시설	다목적구장	251.2	264.0	-	-	-	-	(3.8%)	(4.0%)
	교양시설	데크무대	41.7	42.0	-	-	-	-	(0.7%)	(0.6%)
	편익시설	화장실 외 2종	38.9	137.0	18.2	18.2	18.2	18.2	(0.6%)	(2.1%)
녹 지			5,266.2	5,248.9	-	-	-	-	녹지율 80.6%	녹지율 80.3

□ 공원 세부조성계획(변경) 조서

시설	변경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규모	건축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수량	건축면적	연면적	
총 계				6,537.00		6,537.00				
공원시설	시 설 소 계			1,270.8	증)17.3	1,288.1		258.2	317.9	19.7%
도로 및 광장	소 계			650.0	감)179.4	470.6				7.2%
	변경		도 로	556.2	감)140.3	415.9				6.4%
	폐지		광 장	93.8	감)93.8	0				0.0%
	신설	10	주차장	-	증)54.7	54.7				0.8%
공원관리시설	소 계				증)338.5	338.5		240.0	299.7	5.2%
	신설	4	관리사무소		증)338.5	338.5	2층	240.0	299.7	5.2%
휴양시설	소 계			289.0	감)253.0	36.0				0.6%
	변경		휴 게 공 간	289.0	감)253.0	36.0				0.6%
	변경	1	휴 게 벤 치	-	-	-				0.0%
	폐지	2	퍼 걸 러	-	-	-				0.0%
	변경	3	앉 음 벽	-	-	-	2개소			0.0%
운동시설	소 계			251.2	증)12.8	264.0				4.0%
	변경	5	다목적구장	251.2	증)12.8	264.0				4.0%
교양시설	소 계			41.7	증)0.3	42.0				0.6%
	변경	6	데 크 무 대	41.7	증)0.3	42.0				0.6%
편익시설	소 계			38.9	증)98.1	137.0		18.2	18.2	2.1%
	변경	7	비가림시설	0.0	증)97.0	97.0	1개소			1.5%
	변경	8	화 장 실	38.9	증)1.1	40.0		18.2	18.2	0.6%
	신설	9	음 수 대	-	-	-	1개소			0.0%
녹 지	녹 지 소 계			5,266.20	감)17.3	5,248.9				80.3%

신안군 공고 제2022-1189호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 공고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550번지 일원 “신안교육지원청 청사 이설사업” 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13.

신안군수

1. 사업개요
   - ❍ 사업명 : 신안교육지원청 청사 이설사업
   - ❍ 위 치 :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550번지 일원
   - ❍ 면 적 : 12,683㎡
2.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다음
3.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4. 공람장소 : 신안군 교육복지과 및 압해읍사무소(행정복지센터)
5. 공람기간 : 2022. 10. 13. ~ 2022. 10. 27.
6. 주민의견 제출방법
   -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안군청 교육복지과 또는 압해읍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안군청 교육복지과(☎061-240-8733),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061-260-091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683	-	12,683	100.0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1,390	증)1,293	12,683	100.0	
농림지역		1,293	감)1,293	-	-	

■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율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압해읍 동서리 554-1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 지역	1,293	100	신안교육지원청사 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신안 교육 지원청	공공 청사	압해읍 동서리 550번지	-	증) 12,683	12,683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신안 교육 지원청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12,683㎡	신안군 교육발전과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군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

■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내용	40%이하	100%이하	4층이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12호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1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없음)
   ○ 전라남도지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민간자본(현대건설(주), 현대하이스코(주), 삼우중공업(주), (주)오리엔트조선, MPC 율촌전력(주), POSCO, (유)대영중공업, 대일조선(주))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국토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광양제철소, 여수화학단지 및 광양컨테이너부두 건설과 연계하여 발생되는 신규 산업단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국제교역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서남해안의 전진기지 역할을 함으로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여수시 율촌면,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읍 해면 일원
   ○ 면 적 : 9,106,791.0㎡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입주업체 선수금에 의한 공영개발 및 대행개발방식
   ○ 사업시행기간 : 1994 ~ 2022년(4단계)

단계	단계별 사업시행기간	구역면적(㎡)		
		기정	변경	증감
계	1994년 ~ 2022년	9,106,791.0	9,106,791.0	-
1 단계	1994년 ~ 2011년	394,719.2	394,719.2	-
2 단계	1994년 ~ 2012년	5,864,784.3	5,864,784.3	-
3 단계	1994년 ~ 2013년	1,893,938.6	1,893,938.6	-
4 단계	1994년 ~ 2022년	953,348.9	953,348.9	-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9,106,791.0	100.00	-
공업용지	소계		5,899,951.2	64.79	-
	공장용지		5,637,629.7	61.91	-
	항만(예정)부지		147,863.6	1.62	-
	지원시설용지		101,020.9	1.11	-
	유통업무시설		13,437.0	0.15	-
공공시설용지	소계		2,863,445.1	31.44	-
	도로	일반도로	982,599.3	10.79	-
	공원·녹지	소계	1,015,810.2	11.15	-
		공원	474,912.3	5.21	-
		녹지	540,897.9	5.94	-
	공공공지		1,278.3	0.01	-
	배수로		397,681.6	4.37	-
	전기공급설비	소계	8,418.7 (26,966.5)	0.09 (0.30)	-
		변전소	8,085.4	0.09	-
		철탑	333.3 (1,858.0)	0.01 (0.02)	-
		송전선로	(25,108.5)	(0.28)	-
	소방서		1,843.3	0.02	-
	방송통신시설		331.0	0.01	-
	폐수종말처리장		91,666.4	1.01	-
	폐기물매립장		206,272.2	2.26	-
	호안		95,972.5	1.05	-
	노외주차장		61,571.6	0.68	-
자유무역지역	소계		343,394.7	3.77	-
	공장용지		260,510.1	2.86	-
	도로		40,069.0	0.44	-
	공원		22,130.3	0.24	-
	유통업무시설		8,203.1	0.09	-
	공공청사		7,185.3	0.08	-
	공공공지		364.6	0.01	-
	주차장		4,932.3	0.05	-

주1) 전기공급설비의 ( )는 중복결정 면적이며, 송전선로는 도로, 녹지, 배수로, 공장용지 등과 중복

○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공업용지		5,898,139.8	100.0	-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BL1	2,913,801.8	49.5	2단계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전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BL2	1,098,020.5	18.5	3단계 4단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BL3	386,712.8	6.6	2단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BL4	233,001.3	3.9	2단계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BL5	181,217.8	3.1	3단계
1차금속 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R/D산업, 신소재 IT 산업, 전기장비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BL6	299,966.1	5.1	1단계
자유무역지역 (신소재IT, 제1차금속,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BL7	260,510.1	4.4	2단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전기장비제조업	BL8	283,258.4	4.8	2단계
1차금속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BL9	241,651.0	4.1	2단계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업지역	소계	9,106,791.0	-	9,106,791.0	100.0	-
	일반공업지역	9,106,791.0	-	9,106,791.0	100.0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여수시 율촌면,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읍 해면 일원	9,106,791.0	-	9,106,791.0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55	34,512.4	1,022,668.3	19	12,584.2	373,984.1	23	18,043.6	573,976.0	13	3,884.6	74,708.2
광로	2	5,720.0	286,563.0	-	-	-	2	5,720.0	286,563.0	-	-	-
대로	18	15,956.6	520,523.0	7	7,883.0	279,393.0	8	6,111.6	191,333.0	3	1,962.0	49,797.0
중로	29	12,449.8	211,818.3	10	4,469.2	91,702.1	13	6,212.0	96,080.0	6	1,768.6	24,036.2
소로	6	386.0	3,764.0	2	232.0	2,889.0	-	-	-	4	154.0	875.0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총계		55개노선			-	34,512.4	-	-	-	-	-	-
계		2개노선			-	5,720.0	-	-	-	-	-	-
기정	광로	2	1	50	주간선	2,760.0	대로2-3	대로1-4	-	-	-	-
기정	광로	2	2	50	주간선	2,960.0	대로2-3	대로1-8	-	-	-	-
계		7개노선			-	7,883.0	-	-	-	-	-	-
기정	대로	1	1	35	보조간선	128.0	광로2-2	서측구역계	-	-	-	-
기정	대로	1	2	35	보조간선	518.0	광로2-1	광로2-2	-	-	-	-
기정	대로	1	4	35	보조간선	2,353.0	광로2-2	북측구역계	-	-	-	-
기정	대로	1	5	35	보조간선	3,116.0	대로1-4	대로2-3	-	-	-	-
기정	대로	1	6	35	보조간선	532.0	대로1-5	광로2-1	-	-	-	-
기정	대로	1	7	35	보조간선	1,165.0	대로1-5	동측구역계	-	-	-	-
기정	대로	1	8	35	보조간선	71.0	광로2-2	북측구역계	-	-	-	-
계		8개노선			-	6,111.6	-	-	-	-	-	-
기정	대로	2	1	30	보조간선	517.0	광로2-2	광로2-1	-	-	-	-
기정	대로	2	2	30	보조간선	517.0	광로2-2	광로2-1	-	-	-	-
기정	대로	2	3	30	보조간선	2,363.0	지구동측	중로1-2	-	-	-	-
기정	대로	2	4	30	보조간선	532.0	광로2-1	대로1-5	-	-	-	-
기정	대로	2	5	30	보조간선	600.0	광로2-1	대로1-5	-	-	-	-
기정	대로	2	7	30	보조간선	775.3	대로2-8	대로2-3	-	-	-	-
기정	대로	2	8	30	보조간선	645.0	대로1-5	대로2-7	-	-	-	-
기정	대로	2	9	30	보조간선	162.3	대로2-7	중로1-15	-	-	-	-
계		3개노선			-	1,962.0	-	-	-	-	-	-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	738.0	대로2-3	대로2-8	-	-	-	-

기정	대로	3	4	25	보조간선	669.0	광로2-1	대로2-3	-	-	-	-
기정	대로	3	7	25	보조간선	555.0	대로1-7	대로2-8	-	-	-	-
계		10개노선			-	4,469.2	-	-	-	-	-	-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	1,256.0	광로2-2	광로2-2	-	-	-	-
기정	중로	1	2	20	보조간선	288.0	대로2-3	서측지구계	-	-	-	남측지원도로
기정	중로	1	3	20	보조간선	120.0	대로2-4	공업용지6BL	-	-	-	-
기정	중로	1	5	20	보조간선	593.0	대로2-1	중로1-6	-	-	-	-
기정	중로	1	6	20	보조간선	358.0	광로2-2	중로1-5	-	-	-	-
기정	중로	1	7	20	보조간선	120.0	중로1-1	공업용지9BL	-	-	-	-
기정	중로	1	8	20	보조간선	364.0	대로3-4	대로2-5	-	-	-	-
기정	중로	1	9	20	보조간선	470.0	중로1-8	중로1-8	-	-	-	-
기정	중로	1	14	20	보조간선	338.0	중로1-5	완충녹지14	-	-	-	-
기정	중로	1	15	22	보조간선	562.2	대로1-7	대로2-9	-	-	-	-
계		13개노선			-	6,212.0	-	-	-	-	-	-
기정	중로	2	1	15	집산	364.0	중로1-1	한국가스공사	-	-	-	-
기정	중로	2	2	18	집산	763.0	대로1-2	대로2-1	-	-	-	자유무역지역
기정	중로	2	3	15	집산	170.0	중로2-4	제9근린공원	-	-	-	자유무역지역
기정	중로	2	4	15	집산	757.0	중로2-2	중로2-2	-	-	-	자유무역지역
기정	중로	2	5	15	집산	219.0	중로2-2	중로3-1	-	-	-	자유무역지역
기정	중로	2	6	15	집산	219.0	중로2-2	중로3-1	-	-	-	자유무역지역
기정	중로	2	7	15	집산	53.0	대로1-2	중로2-8	-	-	-	-
기정	중로	2	8	15	집산	478.0	중로2-2	중로2-8	-	-	-	-
기정	중로	2	9	15	집산	34.0	대로2-4	중로2-11	-	-	-	-
기정	중로	2	10	15	집산	50.0	중로2-11	중로2-11	-	-	-	-
기정	중로	2	11	15	집산	817.0	대로2-4	중로2-11	-	-	-	-
기정	중로	2	12	15	집산	1,923.0	중로3-5	MPC율촌전력	-	-	-	호안과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13	15	집산	365.0	대로3-1	대로3-1	-	-	-	-
계		6개노선			-	1,768.6	-	-	-	-	-	-
기정	중로	3	1	12	집산	424.0	중로2-5	중로2-6	-	-	-	자유무역지역
기정	중로	3	2	12	집산	60.0	중로2-1	서측지구계	-	-	-	-
기정	중로	3	3	14	집산	189.4	중로1-1	서측지구계	-	-	-	-
기정	중로	3	4	12	집산	87.2	광로2-2	서측지구계	-	-	-	-
기정	중로	3	5	14	집산	295.0	대로1-4	북측호안	-	-	-	-

기정	중로	3	6	14.5	집산	713.0	대로1-5	공업용지1BL	-	-	-	-
계		2개노선			-	232.0	-	-	-	-	-	-
기정	소로	1	1	10	집산	134.0	대로1-4	서측지구계	-	-	-	-
기정	소로	1	2	8~10	집산	98.0	광로2-2	서측지구계	-	-	-	-
계		4개노선			-	154.0	-	-	-	-	-	-
기정	소로	3	1	6	보행자	29.0	중로2-11	공업용지1BL	-	-	-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3	2	6	보행자	30.0	중로2-11	완충녹지	-	-	-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3	3	6	보행자	58.0	중로2-7	중로2-8	-	-	-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3	4	4	보행자	37.0	대로1-5	중로2-3	-	-	-	보행자도로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6,503.9	-	66,503.9	-
기정	2	주차장	해룡면 호두리 1163-3	4,932.3	-	4,932.3	(자유무역지역)
기정	3	주차장	율촌면 조화리 935	18,207.8	-	18,207.8	-
기정	4	주차장	율촌면 여동리 355-1	6,079.2	-	6,079.2	-
기정	5	주차장	지원시설 4	6,398.9	-	6,398.9	-
기정	6	주차장	해룡면 신성리 903	1,322.3	-	1,322.3	-
기정	7	주차장	해룡면 신성리 904-4	1,322.3	-	1,322.3	-
기정	8	주차장	해룡면 호두리 1179	662.8	-	662.8	-
기정	9	주차장	해룡면 호두리 1180-3	662.0	-	662.0	-
기정	10	주차장	해룡면 선월리 907-6	3,312.9	-	3,312.9	-
기정	12	주차장	율촌면 여동리 354-4	6,404.3	-	6,404.3	-
기정	13	주차장	공장용지 4BL	17,199.1	-	17,199.1	-

(다) 항만(변경없음)

○ 항만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7,863.6	-	147,863.6	-	-
기정	2	항만	항만시설	광양읍 세풍리 2195	25,500.0	-	25,500.0	-	1단계 준공 하이스코 전용부두
기정	3	항만	항만시설	광양읍 세풍리 2196	2,520.0	-	2,520.0	-	1단계 준공 하이스코 임시부두
기정	4	항만	항만시설	광양읍 세풍리 2214	14,785.1	-	14,785.1	-	오리엔트조선 전용부두
기정	5	항만	항만시설	단지 동측	10,401.7	-	10,401.7	-	삼우정공 전용부두
기정	6	항만	항만시설	단지 동측	4,652.3	-	4,652.3	-	현대스틸 전용부두
기정	7	항만	항만시설	단지 남동측	48,003.2	-	48,003.2	-	-
기정	8	항만	항만시설	광양읍 세풍리 2197	42,001.3	-	42,001.3	-	-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40,897.9	-	540,897.9	-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대로1-4호선변	8,140.0	-	8,140.0	-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대로1-1호선변	2,512.0	-	2,512.0	-	지중 송전선로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1배수로변	26,527.0	-	26,527.0	-	전기공급설비②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2배수로변	39,493.0	-	39,493.0	-	-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광로2-2선변	26,873.1	-	26,873.1	-	전기공급설비③,④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해룡면 선월리 913-6	6,870.1	-	6,870.1	-	-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해룡면 호두리 1164	14,489.1	-	14,489.1	-	-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해룡면 호두리 1165	11,213.5	-	11,213.5	-	-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해룡면 호두리 1174	10,999.6	-	10,999.6	-	-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율촌면 조화리 924	56,848.5	-	56,848.5	-	-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대로 2-3선변	51,252.0	-	51,252.0	-	-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완충녹지 11호변	28,382.0	-	28,382.0	-	-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사항선착장옆	10,456.0	-	10,456.0	-	-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광로2-2선변	10,601.7	-	10,601.7	-	-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5배수로변	53,743.0	-	53,743.0	-	-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해룡면 신성리 913	17,004.0	-	17,004.0	-	전기공급설비⑤,⑥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해룡면 신성리 917	14,176.3	-	14,176.3	-	-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북측 호안부	2,150.0	-	2,150.0	-	-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해룡면 신성리 930	10,247.7	-	10,247.7	-	-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해룡면 신성리 915	2,827.3	-	2,827.3	-	-
기정	21	녹지	완충녹지	율촌면 조화리 941	6,615.5	-	6,615.5	-	-
기정	22	녹지	완충녹지	율촌면 조화리 942	5,920.6	-	5,920.6	-	-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해룡면 호두리 1175	10,865.1	-	10,865.1	-	-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6배수로변	9,933.0	-	9,933.0	-	-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MPC율촌전력	17,904.0	-	17,904.0	-	전기공급설비⑦,⑧,⑨
기정	26	녹지	완충녹지	9배수로변	33,640.0	-	33,640.0	-	-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7배수로변	13,413.0	-	13,413.0	-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율촌면 조화리 939	27,300.8	-	27,300.8	-	-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대로2-3선변	10,500.0	-	10,500.0	-	-

(나)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97,042.6	-	497,042.6	-	-
기정	1	제1근린공원	근린공원	해룡면 신성리 911	52,055.2	-	52,055.2	-	-
기정	3	제3근린공원	근린공원	해룡면 호두리 1188	16,703.3	-	16,703.3	-	-
기정	6	제6근린공원	근린공원	율촌면 조화리 928	37,619.1	-	37,619.1	-	-
기정	7	제7근린공원	근린공원	구역 동측 장도공원	351,561.0	-	351,561.0	-	-
기정	8	제8근린공원	근린공원	해룡면 신성리 912	15,950.1	-	15,950.1	-	-
기정	9	제9근린공원	근린공원	해룡면 호두리 1163-1	16,057.3	-	16,057.3	-	(자유무역지역)
기정	10	제1소공원	소공원	해룡면 호두리 1158-1	3,183.7	-	3,183.7	-	(자유무역지역)
기정	11	제2소공원	소공원	해룡면 호두리 1160-4	2,889.3	-	2,889.3	-	(자유무역지역)
기정	12	제3소공원	소공원	해룡면 호두리 1177-3	1,023.6	-	1,023.6	-	-

(다)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42.9	-	1,642.9	-	-
기정	1	공공공지	해룡면 호두리 1160-7	364.6	-	364.6	-	(자유무역지역)
기정	2	공공공지	해룡면 호두리 1186	1,278.3	-	1,278.3	-	-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가) 유통업무설비(변경없음)

○ 유통업무설비(물류창고)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1,640.1	-	21,640.1	-	-
기정	1	유통업무설비	해룡면 호두리 1162-9	8,203.1	-	8,203.1	-	(자유무역지역)
기정	2	유통업무설비	광양읍 세풍리 2198	13,437.0	-	13,437.0	-	-

(나)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단위시설(발전소)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2,517.6	-	162,517.6	-	-
기정	1	발전소	광양읍 세풍리 2199	162,517.6	-	162,517.6	-	-

❍ 단위시설(변전소)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085.4	-	8,085.4	-	-
기정	1	변전소	해룡면 선월리 912	8,085.4	-	8,085.4	-	-

❍ 단위시설(철탑)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33.3 (1,858.0)	-	333.3 (1,858.0)	-	-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철탑)	1배수로변	333.3	-	333.3	-	-
기정	2	전기공급설비 (철탑)	완충녹지3	(404.0)	-	(404.0)	-	-
기정	3	전기공급설비 (철탑)	완충녹지5	(260.0)	-	(260.0)	-	-
기정	4	전기공급설비 (철탑)	완충녹지5	(129.0)	-	(129.0)	-	-
기정	5	전기공급설비 (철탑)	완충녹지16	(186.0)	-	(186.0)	-	-
기정	6	전기공급설비 (철탑)	완충녹지16	(188.0)	-	(188.0)	-	-
기정	7	전기공급설비 (철탑)	완충녹지25	(258.0)	-	(258.0)	-	-
기정	8	전기공급설비 (철탑)	완충녹지25	(194.0)	-	(194.0)	-	-
기정	9	전기공급설비 (철탑)	완충녹지25	(239.0)	-	(239.0)	-	-

주) ( )는 중복결정 면적임

○ 간선시설(송전선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0	전기공급설비 (지상 송전선로)	LNG발전소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199)	변전소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912)	-	2.4	(25,108.5)	-	550MW 154kv

주) ( )는 중복결정 면적이며, 송전선로는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녹지, 배수로, 공장용지 등과 중복 결정

(다)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단위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472.5	-	8,472.5	-	-
기정	1	가스공급시설	공장용지 2BL	357.9	-	357.9	-	-
기정	2	가스공급시설	공장용지 2BL	4,117.3	-	4,117.3	-	-
기정	3	가스공급시설	공장용지 2BL	3,997.3	-	3,997.3	-	-

(라) 방송·통신시설(변경없음)

○ 방송·통신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31.0	-	331.0	-	-
기정	1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해룡면 호두리 1177	331.0	-	331.0	-	-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028.6	-	9,028.6	-	-
기정	1	공공청사	공공청사	해룡면 호두리 1163-2	7,185.3	-	7,185.3	-	(자유무역지역)
기정	2	공공청사	소방서	해룡면 호두리 1182	1,843.3	-	1,843.3	-	-

5)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하천(변경없음)

○ 하천(배수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97,681.6	-	397,681.6	-	-
기정	1	하천	구역 서측	39,822.7	-	39,822.7	-	-
기정	2	하천	구역 서측	41,978.0	-	41,978.0	-	-
기정	3	하천	구역 서측	42,697.0	-	42,697.0	-	-
기정	4	하천	구역 서측	14,632.0	-	14,632.0	-	-
기정	5	하천	구역 서측	104,890.8	-	104,890.8	-	-
기정	6	하천	구역 서측	13,521.0	-	13,521.0	-	-
기정	7	하천	율촌면 조화리 932	18,744.1	-	18,744.1	-	-
기정	8	하천	구역 서측	3,415.0	-	3,415.0	-	-
기정	9	하천	구역 서측	116,566.0	-	116,566.0	-	-
기정	10	하천	구역 서측	1,415.0	-	1,415.0	-	-

(나) 방조설비(변경없음)

○ 방조설비(호안)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5,972.5	-	95,972.5	-	-
기정	1	호안	동측 및 북측 해면부	33,928.0	-	33,928.0	-	-
기정	2	호안	남측 해면부	39,716.0	-	39,716.0	-	-
기정	3	호안	동측 해면부	22,328.5	-	22,328.5	-	-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가) 폐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 폐수종말처리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1,666.4	-	91,666.4	-	-
기정	1	폐수종말처리장	율촌면 조화리 921	91,666.4	-	91,666.4	-	-

(나)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06,272.2	-	206,272.2	-	-
기정	1	폐기물 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율촌면 조화리 920	206,272.2	-	206,272.2	-	-

【 상수계획평면도(공업용수) - 기정 】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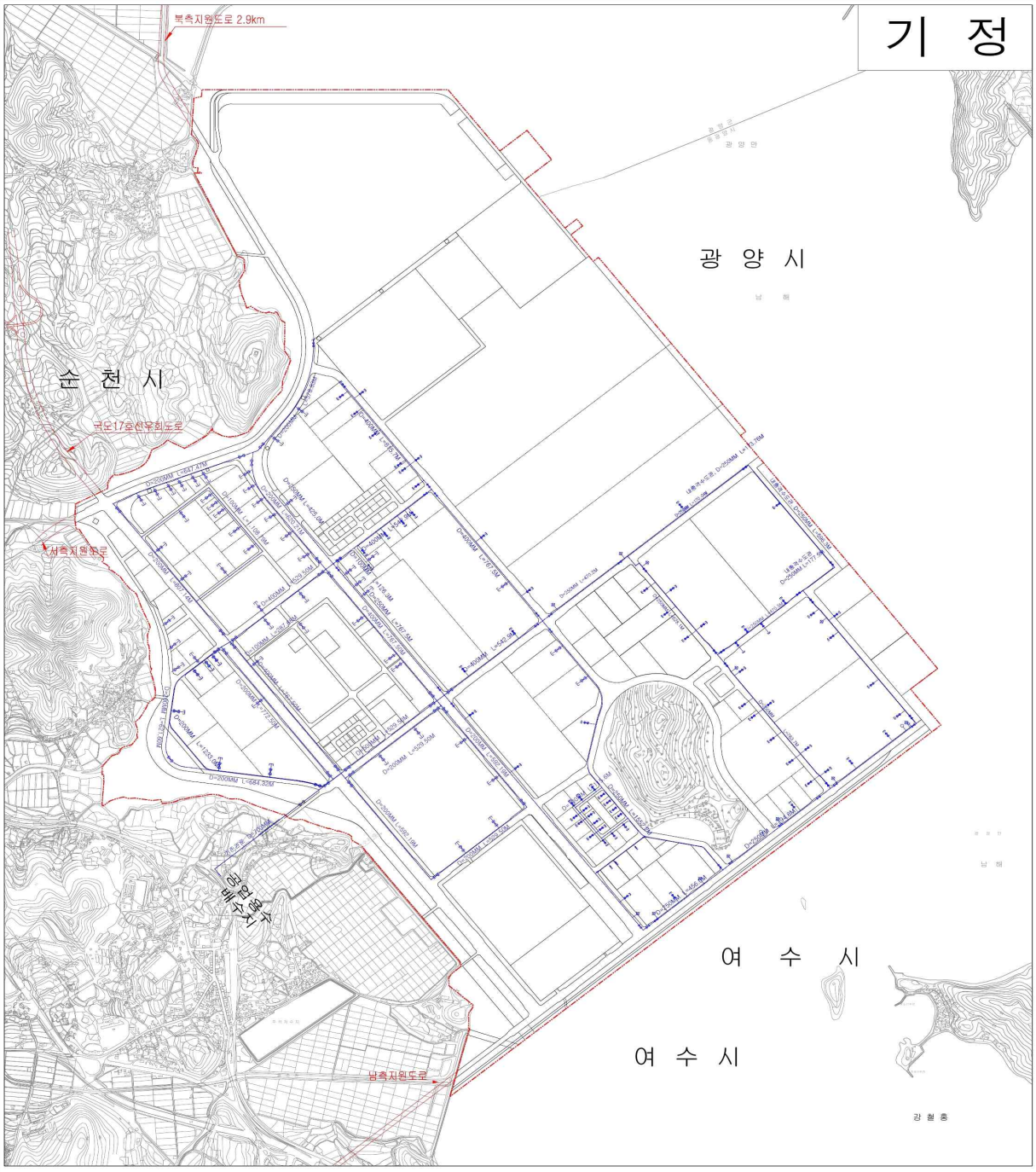

상수계획도 (공업용수)	범례	구 역 계 공업용수관로 (기정)	축척	S = 1:10,000 0 100 300 600 1000M

【 상수계획평면도(공업용수) - 변경 】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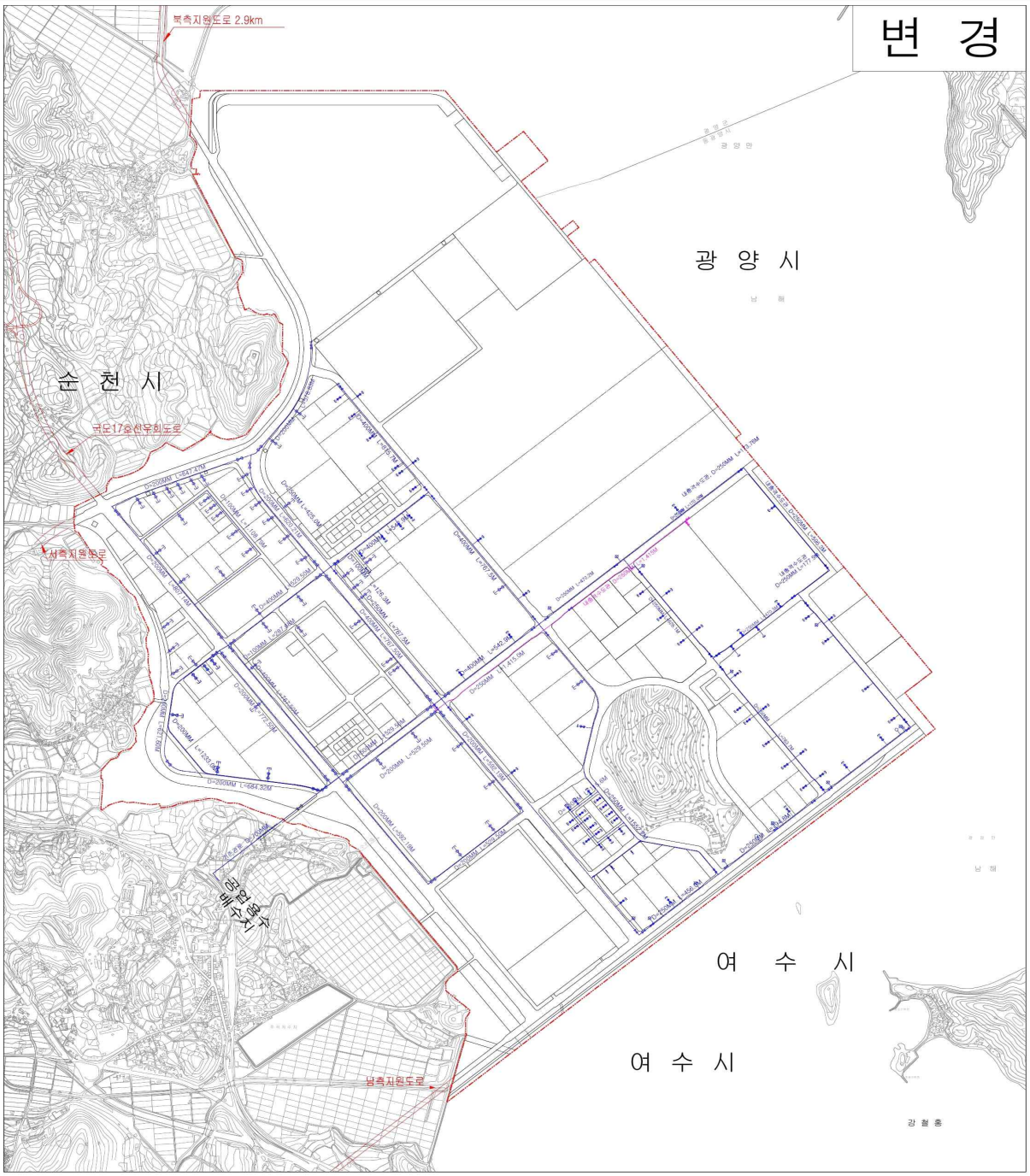

상수계획도 (공업용수)	범례	구 역 계 공업용수관로 (기정) 공업용수관로 (신설)	축척	S = 1:10,000 0 100 300 600 1000M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총괄표(변경없음)

가구 번호	구분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합계		9,106,791.0	9,106,791.0	-	-	9,106,791.0	-
공업용지		5,899,951.2	5,899,951.2	-	-	5,899,951.2	-
A	공장용지	5,637,629.7	5,637,629.7	-	A	5,637,629.7	-
K	항만부지	147,863.6	147,863.6	-	K	147,863.6	-
B	지원시설용지	101,020.9	101,020.9	-	B	101,020.9	-
F	유통업무시설	13,437.0	13,437.0	-	F	13,437.0	-
공공시설용지		2,863,445.1	2,863,445.1	-	-	2,863,445.1	-
-	도로	982,599.3	982,599.3	-	-	982,599.3	-
G	공원	474,912.3	474,912.3	-	G	474,912.3	-
H	녹지(완충)	503,097.1	503,097.1	-	H	503,097.1	-
P	녹지(경관)	37,800.8	37,800.8	-	P	37,800.8	-
I	공공공지	1,278.3	1,278.3	-	I	1,278.3	-
M	배수로	397,681.6	397,681.6	-	M	397,681.6	-
J	전기공급설비(변전소)	8,085.4	8,085.4	-	J	8,085.4	-
Q	전기공급설비(철탑)	333.3 (1,858.0)	333.3 (1,858.0)	-	Q	333.3 (1,858.0)	-
-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25,108.5)	(25,108.5)	-	-	(25,108.5)	-
E	소방서	1,843.3	1,843.3	-	E	1,843.3	-
D	방송통신시설	331.0	331.0	-	D	331.0	-
N	폐수종말처리장	91,666.4	91,666.4	-	N	91,666.4	-
O	폐기물매립장	206,272.2	206,272.2	-	O	206,272.2	-
L	호안	95,972.5	95,972.5	-	L	95,972.5	-
C	노외주차장	61,571.6	61,571.6	-	C	61,571.6	-
자유무역지역		343,394.7	343,394.7	-	-	343,394.7	-
-	도로	40,069.0	40,069.0	-	-	40,069.0	-
A	공장용지	260,510.1	260,510.1	-	A	260,510.1	-
G	공원	22,130.3	22,130.3	-	G	22,130.3	-
F	유통업무시설	8,203.1	8,203.1	-	F	8,203.1	-
E	공공청사	7,185.3	7,185.3	-	E	7,185.3	-
I	공공공지	364.6	364.6	-	I	364.6	-
C	주차장	4,932.3	4,932.3	-	C	4,932.3	-

주) ( ) 중복결정 면적임

(가) 공업용지(변경없음)

① 공장용지(변경없음)

○ 가구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5,637,629.7	5,637,629.7	-	-	5,637,629.7	-
-	A-1	2,913,801.8	2,913,801.8	-	A-1BL내	2,913,801.8	공장용지
	A-2	1,098,020.5	1,098,020.5	-	A-2BL내	1,098,020.5	공장용지
	A-3	386,712.8	386,712.8	-	A-3BL내	386,712.8	공장용지
	A-4	233,001.3	233,001.3	-	A-4BL내	233,001.3	공장용지
	A-5	181,217.8	181,217.8	-	A-5BL내	181,217.8	공장용지
	A-6	299,966.1	299,966.1	-	A-6BL내	299,966.1	공장용지
	A-8	283,258.4	283,258.4	-	A-8BL내	283,258.4	공장용지
	A-9	241,651.0	241,651.0	-	A-9BL내	241,651.0	공장용지

※ A-7 자유무역지역

○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합계			5,637,629.7	5,637,629.7	-	-	5,637,629.7	-
소계			2,913,801.8	2,913,801.8	-	-	2,913,801.8	-
-	A-1	-1	822,154.1	822,154.1	-	광양읍 세풍리 2197-1외	822,154.1	-
		-2	162,517.6	162,517.6	-	광양읍 세풍리 2199	162,517.6	-
		-3	623,183.5	623,183.5	-	광양읍 세풍리 2200외	623,183.5	-
		-4	413,078.2	413,078.2	-	광양읍 세풍리 2201외	413,078.2	-
		-5	330,426.8	330,426.8	-	광양읍 세풍리 2202	330,426.8	-
		-6	57,497.8	57,497.8	-	해룡면 신성리 900-5	57,497.8	-
		-7	26,888.8	26,888.8	-	해룡면 신성리 900-1	26,888.8	-
		-8	10,360.2	10,360.2	-	해룡면 신성리 900	10,360.2	-
		-10	56,481.3	56,481.3	-	해룡면 신성리 900-2	56,481.3	-
		-11	61,146.7	61,146.7	-	해룡면 신성리 900-4	61,146.7	-
		-12	11,873.6	11,873.6	-	해룡면 신성리 900-3	11,873.6	-
		-13	9,979	9,979	-	해룡면 신성리 901	9,979	-
		-14	6,607.9	6,607.9	-	해룡면 신성리 901-1	6,607.9	-
		-15	246,839.5	246,839.5	-	해룡면 신성리 898외	246,839.5	-
		-16	3,000.1	3,000.1	-	공장용지 1BL	3,000.1	-
		-17	71,766.7	71,766.7	-	광양읍세풍리 2200외	71,766.7	
소계			1,098,020.5	1,098,020.5	-	-	1,098,020.5	-
-	A-2	-1	207,860.9	207,860.9	-	공장용지 2BL	207,860.9	-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2	165,203.4	165,203.4	-	공장용지 2BL	165,203.4	-
		-3	144,897.4	144,897.4	-	공장용지 2BL	144,897.4	-
		-4	170,977.7	170,977.7	-	공장용지 2BL	170,977.7	-
		-5	180,937.2	180,937.2	-	공장용지 2BL	180,937.2	-
		-6	32,040.8	32,040.8	-	공장용지 2BL	32,040.8	-
		-7	196,103.1	196,103.1	-	공장용지 2BL	196,103.1	-
소계			386,712.8	386,712.8	-	-	386,712.8	-
-	A-3	-1	8,220.0	8,220.0	-	해룡면 신성리 907-4	8,220.0	-
		-2	5,140.2	5,140.2	-	해룡면 신성리 907-3	5,140.2	-
		-3	6,596.4	6,596.4	-	해룡면 신성리 907	6,596.4	-
		-4	6,572.6	6,572.6	-	해룡면 신성리 907-1	6,572.6	-
		-5	6,076.7	6,076.7	-	해룡면 신성리 907-2	6,076.7	-
		-6	6,693.9	6,693.9	-	해룡면 신성리 909-2	6,693.9	-
		-7	7,936.6	7,936.6	-	해룡면 신성리 909-1	7,936.6	-
		-8	13,148.1	13,148.1	-	해룡면 신성리 909	13,148.1	-
		-9	132,352.5	132,352.5	-	해룡면 신성리 908	132,352.5	-
		-10	193,975.8	193,975.8	-	해룡면 신성리 910외	193,975.8	-
소계			233,001.3	233,001.3	-	-	233,001.3	-
-	A-4	-1	155,708.5	155,708.5	-	해룡면 신성리 928외	155,708.5	-
		-2	38,646.3	38,646.3	-	광양읍 세풍리 2210	38,646.3	-
		-3	38,646.5	38,646.5	-	율촌면 조화리 933외	38,646.5	-
소계			181,217.8	181,217.8	-	-	181,217.8	-
-	A-5	-1	5,366.0	5,366.0	-	율촌면 여동리 353	5,366.0	-
		-2	5,357.3	5,357.3	-	율촌면 여동리 353-1	5,357.3	-
		-3	9,091.3	9,091.3	-	율촌면 여동리 353-2	9,091.3	-
		-4	5,608.8	5,608.8	-	율촌면 여동리 353-3	5,608.8	-
		-5	5,792.0	5,792.0	-	율촌면 여동리 353-4	5,792.0	-
		-6	5,614.3	5,614.3	-	율촌면 여동리 353-5	5,614.3	-
		-7	7,897.9	7,897.9	-	율촌면 여동리 353-6	7,897.9	-
		-8	4,785.1	4,785.1	-	율촌면 여동리 353-7	4,785.1	-
		-9	5,004.7	5,004.7	-	율촌면 여동리 353-8	5,004.7	-
		-10	1,876.1	1,876.1	-	율촌면 여동리 354-8	1,876.1	-
		-11	3,799.0	3,799.0	-	율촌면 여동리 354-6	3,799.0	-
		-13	1,874.2	1,874.2	-	율촌면 여동리 354-5	1,874.2	-
		-14	1,873.3	1,873.3	-	율촌면 여동리 354	1,873.3	-
		-15	1,901.1	1,901.1	-	율촌면 여동리 354-1	1,901.1	-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16	1,901.0	1,901.0	-	율촌면 여동리 354-2	1,901.0	-
		-17	1,876.4	1,876.4	-	율촌면 여동리 354-3	1,876.4	-
		-18	111,599.3	111,599.3	-	율촌면 여동리 355	111,599.3	-
소계			299,966.1	299,966.1	-	-	299,966.1	-
-	A-6	-1	13,886.9	13,886.9	-	해룡면 선월리 906-1	13,886.9	-
		-2	9,926.2	9,926.2	-	해룡면 선월리 906-2	9,926.2	-
		-3	3,295.6	3,295.6	-	해룡면 선월리 906-3	3,295.6	-
		-4	4,949.9	4,949.9	-	해룡면 선월리 906-4	4,949.9	-
		-5	3,817.2	3,817.2	-	해룡면 선월리 906-5	3,817.2	-
		-6	4,951.6	4,951.6	-	해룡면 선월리 906-6	4,951.6	-
		-7	12,244.2	12,244.2	-	해룡면 선월리 906-7	12,244.2	-
		-8	10,609.2	10,609.2	-	해룡면 선월리 906-8	10,609.2	-
		-9	9,960.9	9,960.9	-	해룡면 선월리 906-9	9,960.9	-
		-10	9,923.2	9,923.2	-	해룡면 선월리 906-10	9,923.2	-
		-11	16,499.7	16,499.7	-	해룡면 선월리 906-11	16,499.7	-
		-12	16,519.2	16,519.2	-	해룡면 선월리 906-12	16,519.2	-
		-13	16,485.6	16,485.6	-	해룡면 선월리 907-1	16,485.6	-
		-14	30,575.8	30,575.8	-	해룡면 선월리 907-2	30,575.8	-
		-15	3,303.8	3,303.8	-	해룡면 선월리 907-3	3,303.8	-
		-16	3,315.4	3,315.4	-	해룡면 선월리 907-4	3,315.4	-
		-17	3,295.9	3,295.9	-	해룡면 선월리 907-5	3,295.9	-
		-18	10,709.7	10,709.7	-	해룡면 선월리 907-7	10,709.7	-
		-19	13,205.1	13,205.1	-	해룡면 선월리 907-8	13,205.1	-
		-20	16,531.1	16,531.1	-	해룡면 선월리 907-9	16,531.1	-
		-21	19,836.0	19,836.0	-	해룡면 선월리 907-10	19,836.0	-
		-22	66,123.9	66,123.9	-	해룡면 선월리 908	66,123.9	-
소계			283,258.4	283,258.4	-	-	283,258.4	-
-	A-8	-1	283,258.4	283,258.4	-	해룡면 호두리 1173외	283,258.4	-
소계			241,651.0	241,651.0	-	-	241,651.0	-
-	A-9	-1	4,961.1	4,961.1	-	해룡면 선월리 913-5	4,961.1	-
		-2	9,920.6	9,920.6	-	해룡면 선월리 913-7	9,920.6	-
		-3	5,874.2	5,874.2	-	해룡면 선월리 913-9	5,874.2	-
		-4	13,223.6	13,223.6	-	해룡면 선월리 913-8	13,223.6	-
		-5	10,760.4	10,760.4	-	해룡면 호두리 1156-4	10,760.4	-
		-6	4,539.2	4,539.2	-	해룡면 호두리 1156-5	4,539.2	-
		-7	6,621.9	6,621.9	-	해룡면 호두리 1156-6	6,621.9	-
		-8	33,895.2	33,895.2	-	해룡면 호두리 1156	33,895.2	-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9	38,041.7	38,041.7	-	해룡면 호두리 1156-1	38,041.7	-
		-10	61,185.0	61,185.0	-	해룡면 호두리 1156-3	61,185.0	-
		-11	52,628.1	52,628.1	-	해룡면 호두리 1156-2	52,628.1	-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207,856.0	207,856.0	-	-	207,856.0	-
-	A-2-1	-1	10,078.0	10,078.0	-	공장용지 2-1BL	10,078.0	-
		-2	9,609.0	9,609.0	-	공장용지 2-1BL	9,609.0	-
		-3	19,837.0	19,837.0	-	공장용지 2-1BL	19,837.0	-
		-4	19,837.0	19,837.0	-	공장용지 2-1BL	19,837.0	-
		-5	16,447.0	16,447.0	-	공장용지 2-1BL	16,447.0	-
		-6	16,528.0	16,528.0	-	공장용지 2-1BL	16,528.0	-
		-7	16,361.0	16,361.0	-	공장용지 2-1BL	16,361.0	-
		-8	16,528.0	16,528.0	-	공장용지 2-1BL	16,528.0	-
		-9	49,472.0	49,472.0	-	공장용지 2-1BL	49,472.0	-
		-10	33,159.0	33,159.0	-	공장용지 2-1BL	33,159.0	-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145,028.0	145,028.0	-	-	145,028.0	-
-	A-2-3	-1	9,917.0	9,917.0	-	공장용지 2-3BL	9,917.0	-
		-2	9,917.0	9,917.0	-	공장용지 2-3BL	9,917.0	-
		-3	85,525.0	85,525.0	-	공장용지 2-3BL	85,525.0	-
		-4	9,917.0	9,917.0	-	공장용지 2-3BL	9,917.0	-
		-5	9,906.0	9,906.0	-	공장용지 2-3BL	9,906.0	-
		-6	9,884.0	9,884.0	-	공장용지 2-3BL	9,884.0	-
		-7	9,962.0	9,962.0	-	공장용지 2-3BL	9,962.0	-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111,599.3	111,599.3	-	-	111,599.3	-
-	A-5-18	-1	23,120.6	23,120.6		공장용지 5-18BL	23,120.6	
		-2	31,534.5	31,534.5		공장용지 5-18BL	31,534.5	
		-3	2,314.0	2,314.0		공장용지 5-18BL	2,314.0	
		-4	11,571.1	11,571.1		공장용지 5-18BL	11,571.1	
		-5	8,264.6	8,264.6		공장용지 5-18BL	8,264.6	
		-6	8,264.5	8,264.5		공장용지 5-18BL	8,264.5	
		-7	3,409.4	3,409.4		공장용지 5-18BL	3,409.4	
		-8	23,120.6	23,120.6		공장용지 5-18BL	23,120.6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32,040.8	32,040.8	-	-	32,040.8	-
-	A-2-6	-1	14,371.4	14,371.4		공장용지2-6BL	14,371.4	
		-2	17,669.4	17,669.4		공장용지2-6BL	17,669.4	

② 항만부지(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147,863.6	147,863.6	-	-	147,863.6	-
-	K	-1	25,500.0	25,500.0	-	광양읍 세풍리 2195	25,500.0	-
		-2	2,520.0	2,520.0	-	광양읍 세풍리 2196	2,520.0	-
		-3	14,785.1	14,785.1	-	광양읍 세풍리 2214외	14,785.1	-
		-4	10,401.7	10,401.7	-	단지 동측	10,401.7	-
		-5	4,652.3	4,652.3	-	단지 동측	4,652.3	-
		-6	48,003.2	48,003.2	-	단지 남동측	48,003.2	-
		-7	42,001.3	42,001.3	-	광양읍 세풍리 2197	42,001.3	-

③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가구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101,020.9	101,020.9	-	-	101,020.9	-
-	B-1	29,705.0	29,705.0	-	B-1BL 내	29,705.0	-
	B-2	27,314.8	27,314.8	-	B-2BL 내	27,314.8	-
	B-3	36,186.6	36,186.6	-	B-3BL 내	36,186.6	-
	B-4	7,814.5	7,814.5	-	B-4BL 내	7,814.5	-

○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합계			101,020.9	101,020.9	-	-	101,020.9	-
소계			29,705.0	29,705.0	-	-	29,705.0	-
-	B-1	-1	3,273.0	3,273.0	-	해룡면 선월리 913	3,273.0	-
		-2	3,324.1	3,324.1	-	해룡면 선월리 913-1	3,324.1	-
		-3	13,161.2	13,161.2	-	해룡면 선월리 913-2	13,161.2	-
		-4	9,946.7	9,946.7	-	해룡면 선월리 913-3	9,946.7	-
소계			27,314.8	27,314.8	-	-	27,314.8	-
-	B-2	-1	1,771.1	1,771.1	-	해룡면 호두리 1181-5	1,771.1	-
		-2	1,755.8	1,755.8	-	해룡면 호두리 1181-4	1,755.8	-
		-3	2,242.2	2,242.2	-	해룡면 호두리 1181-3	2,242.2	-
		-4	1,065.0	1,065.0	-	해룡면 호두리 1181-2	1,065.0	-
		-5	1,148.8	1,148.8	-	해룡면 호두리 1181-1	1,148.8	-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	B-2	-6	1,148.9	1,148.9	-	해룡면 호두리 1181	1,148.9	-
		-7	1,389.3	1,389.3	-	해룡면 호두리 1177-6	1,389.3	-
		-8	918.3	918.3	-	해룡면 호두리 1177-5	918.3	-
		-9	917.7	917.7	-	해룡면 호두리 1177-4	917.7	-
		-10	736.3	736.3	-	해룡면 호두리 1177-2	736.3	-
		-11	735.5	735.5	-	해룡면 호두리 1177-1	735.5	-
		-12	1,434.2	1,434.2	-	해룡면 호두리 1178	1,434.2	-
		-13	1,314.2	1,314.2	-	해룡면 호두리 1178-1	1,314.2	-
		-14	1,337.7	1,337.7	-	해룡면 호두리 1178-2	1,337.7	-
		-15	1,803.0	1,803.0	-	해룡면 호두리 1182-2	1,803.0	-
		-16	1,751.1	1,751.1	-	해룡면 호두리 1182-1	1,751.1	-
		-17	662.7	662.7	-	해룡면 호두리 1179-5	662.7	-
		-18	579.8	579.8	-	해룡면 호두리 1179-4	579.8	-
		-19	579.1	579.1	-	해룡면 호두리 1179-3	579.1	-
		-20	551.1	551.1	-	해룡면 호두리 1180-5	551.1	-
		-21	550.9	550.9	-	해룡면 호두리 1180-4	550.9	-
		-22	662.3	662.3	-	해룡면 호두리 1180-2	662.3	-
		-23	550.7	550.7	-	해룡면 호두리 1180-1	550.7	-
		-24	550.9	550.9	-	해룡면 호두리 1180	550.9	-
		-25	578.8	578.8	-	해룡면 호두리 1179-2	578.8	-
		-26	579.4	579.4	-	해룡면 호두리 1179-1	579.4	-
계			36,186.6	36,186.6	-	-	36,186.6	-
-	B-3	-1	1,398.0	1,398.0	-	해룡면 신성리 905	1,398.0	-
		-2	1,429.8	1,429.8	-	해룡면 신성리 905-1	1,429.8	-
		-3	1,429.8	1,429.8	-	해룡면 신성리 905-2	1,429.8	-
		-4	1,396.9	1,396.9	-	해룡면 신성리 905-3	1,396.9	-
		-5	1,481.7	1,481.7	-	해룡면 신성리 906	1,481.7	-
		-6	1,507.7	1,507.7	-	해룡면 신성리 906-1	1,507.7	-
		-7	1,505.1	1,505.1	-	해룡면 신성리 906-2	1,505.1	-
		-8	1,099.3	1,099.3	-	해룡면 신성리 906-3	1,099.3	-
		-9	1,111.6	1,111.6	-	해룡면 신성리 906-4	1,111.6	-
		-10	1,102.1	1,102.1	-	해룡면 신성리 906-5	1,102.1	-
		-11	966.7	966.7	-	해룡면 신성리 902-10	966.7	-
		-12	951.3	951.3	-	해룡면 신성리 902-9	951.3	-
		-13	951.3	951.3	-	해룡면 신성리 902-8	951.3	-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	B-3	-14	951.3	951.3	-	해룡면 신성리 902-7	951.3	-
		-15	951.3	951.3	-	해룡면 신성리 902-6	951.3	-
		-16	951.3	951.3	-	해룡면 신성리 902-5	951.3	-
		-17	951.3	951.3	-	해룡면 신성리 902-4	951.3	-
		-18	951.3	951.3	-	해룡면 신성리 902-3	951.3	-
		-19	951.3	951.3	-	해룡면 신성리 902-2	951.3	-
		-20	1,037.9	1,037.9	-	해룡면 신성리 902-1	1,037.9	-
		-21	1,036.9	1,036.9	-	해룡면 신성리 902	1,036.9	-
		-22	720.5	720.5	-	해룡면 신성리 903-1	720.5	-
		-23	719.0	719.0	-	해룡면 신성리 903-10	719.0	-
		-24	718.5	718.5	-	해룡면 신성리 903-9	718.5	-
		-25	718.2	718.2	-	해룡면 신성리 903-8	718.2	-
		-26	699.4	699.4	-	해룡면 신성리 903-7	699.4	-
		-27	856.0	856.0	-	해룡면 신성리 904	856.0	-
		-28	796.5	796.5	-	해룡면 신성리 904-6	796.5	-
		-29	792.1	792.1	-	해룡면 신성리 904-5	792.1	-
		-30	800.0	800.0	-	해룡면 신성리 904-3	800.0	-
		-31	803.6	803.6	-	해룡면 신성리 904-2	803.6	-
		-32	862.3	862.3	-	해룡면 신성리 904-1	862.3	-
		-33	703.7	703.7	-	해룡면 신성리 903-6	703.7	-
		-34	721.3	721.3	-	해룡면 신성리 903-5	721.3	-
		-35	720.5	720.5	-	해룡면 신성리 903-4	720.5	-
		-36	720.3	720.3	-	해룡면 신성리 903-3	720.3	-
		-37	720.8	720.8	-	해룡면 신성리 903-2	720.8	-
계			7,814.5	7,814.5	-	-	7,814.5	-
-	B-4	-1	1,052.0	1,052.0	-	2BL 내 지원시설용지	1,052.0	-
		-2	1,052.4	1,052.4	-	2BL 내 지원시설용지	1,052.4	-
		-3	1,053.4	1,053.4	-	2BL 내 지원시설용지	1,053.4	-
		-4	1,520.7	1,520.7	-	2BL 내 지원시설용지	1,520.7	-
		-5	776.3	776.3	-	2BL 내 지원시설용지	776.3	-
		-6	744.8	744.8	-	2BL 내 지원시설용지	744.8	-
		-7	768.2	768.2	-	2BL 내 지원시설용지	768.2	-
		-8	846.7	846.7	-	2BL 내 지원시설용지	846.7	-

④ 유통업무시설(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13,437.0	13,437.0	-	-	13,437.0	-
-	F	-1	13,437.0	13,437.0	-	광양읍 세풍리 2198	13,437.0	-

※ F-2 자유무역지역

(나)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① 공원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474,912.3	474,912.3	-	-	474,912.3	-
-	G	-1	52,055.2	52,055.2	-	해룡면 신성리 911	52,055.2	-
		-3	16,703.3	16,703.3	-	해룡면 호두리 1188	16,703.3	-
		-6	37,619.1	37,619.1	-	율촌면 조화리 928	37,619.1	-
		-7	351,561.0	351,561.0	-	구역 동측 장도공원	351,561.0	-
		-8	15,950.1	15,950.1	-	해룡면 신성리 912	15,950.1	-
		-12	1,023.6	1,023.6	-	해룡면 호두리 1177-3	1,023.6	-

※ G-9, G-10, G-11 자유무역지역

② 녹지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540,897.9	540,897.9	-	-	540,897.9	-
-	H	-1	8,140.0	8,140.0	-	대로 1-4호선변	8,140.0	-
		-2	2,512.0	2,512.0	-	대로 1-1호선변	2,512.0	-
		-3	26,527.0	26,527.0	-	1배수로변	26,527.0	-
		-4	39,493.0	39,493.0	-	2배수로변	39,493.0	-
		-5	26,873.1	26,873.1	-	광로 2-2호선변	26,873.1	-
		-6	6,870.1	6,870.1	-	해룡면 선월리 913-6	6,870.1	-
		-7	14,489.1	14,489.1	-	해룡면 호두리 1164	14,489.1	-
		-8	11,213.5	11,213.5	-	해룡면 호두리 1165	11,213.5	-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	H	-9	10,999.6	10,999.6	-	해룡면 호두리 1174	10,999.6	-
		-10	56,848.5	56,848.5	-	율촌면 조화리 924	56,848.5	-
		-11	51,252.0	51,252.0	-	대로 2-3선변	51,252.0	-
		-12	28,382.0	28,382.0	-	완충녹지 11호변	28,382.0	-
		-13	10,456.0	10,456.0	-	사항선착장 옆	10,456.0	-
		-14	10,601.7	10,601.7	-	광로2-2선변단계별	10,601.7	-
		-15	53,743.0	53,743.0	-	5배수로변	53,743.0	-
		-16	17,004.0	17,004.0	-	해룡면 신성리 913	17,004.0	-
		-17	14,176.3	14,176.3	-	해룡면 신성리 917	14,176.3	-
		-18	2,150.0	2,150.0	-	북측 호안부	2,150.0	-
		-19	10,247.7	10,247.7	-	해룡면 신성리 930	10,247.7	-
		-20	2,827.3	2,827.3	-	해룡면 신성리 915	2,827.3	-
		-21	6,615.5	6,615.5	-	율촌면 조화리 941	6,615.5	-
		-22	5,920.6	5,920.6	-	율촌면 조화리 942	5,920.6	-
		-23	10,865.1	10,865.1	-	해룡면 호두리 1175	10,865.1	-
		-24	9,933.0	9,933.0	-	6배수로변	9,933.0	-
		-25	17,904.0	17,904.0	-	MPC율촌전력	17,904.0	-
		-26	33,640.0	33,640.0	-	9배수로변	33,640.0	-
		-27	13,413.0	13,413.0	-	7배수로변	13,413.0	-
-	P	-1	27,300.8	27,300.8	-	율촌면 조화리 939	27,300.8	-
		-2	10,500.0	10,500.0	-	대로 2-3선변	10,500.0	-

③ 공공공지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1,278.3	1,278.3	-	-	1,278.3	-
-	I	-2	1,278.3	1,278.3	-	해룡면 호두리 1186	1,278.3	-

※ I-1 자유무역지역

④ 배수로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397,681.6	397,681.6		-	397,681.6	-
-	M	-1	39,822.7	39,822.7		구역 서측	39,822.7	-
		-2	41,978.0	41,978.0	-	구역 서측	41,978.0	-
		-3	42,697.0	42,697.0	-	구역 서측	42,697.0	-
		-4	14,632.0	14,632.0	-	구역 서측	14,632.0	-
		-5	104,890.8	104,890.8	-	구역 서측	104,890.8	-
		-6	13,521.0	13,521.0	-	구역 서측	13,521.0	-
		-7	18,744.1	18,744.1	-	율촌면 조화리 932	18,744.1	-
		-8	3,415.0	3,415.0	-	구역 서측	3,415.0	-
		-9	116,566.0	116,566.0	-	구역 서측	116,566.0	-
		-10	1,415.0	1,415.0	-	구역 서측	1,415.0	-

⑤ 전기공급설비(변전소)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8,085.4	8,085.4	-	-	8,085.4	-
-	J	-1	8,085.4	8,085.4	-	해룡면 선월리 912	8,085.4	-

⑥ 전기공급설비(철탑)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333.3 (1,858.0)	333.3 (1,858.0)	- (-)	-	333.3 (1,858.0)	-
-	Q	-1	333.3	333.3	-	1배수로변	333.3	-
		-2	(404.0)	(404.0)	(-)	완충녹지3	(404.0)	중복결정
		-3	(260.0)	(260.0)	(-)	완충녹지5	(260.0)	중복결정
		-4	(129.0)	(129.0)	(-)	완충녹지3	(129.0)	중복결정
		-5	(186.0)	(186.0)	(-)	완충녹지16	(186.0)	중복결정
		-6	(188.0)	(188.0)	(-)	완충녹지16	(188.0)	중복결정
		-7	(258.0)	(258.0)	(-)	완충녹지25	(258.0)	중복결정
		-8	(194.0)	(194.0)	(-)	완충녹지25	(194.0)	중복결정
		-9	(239.0)	(239.0)	(-)	완충녹지25	(239.0)	중복결정

주) ( ) 중복결정 면적임

⑦ 소방서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1,843.3	1,843.3	-	-	1,843.3	-
-	E	-2	1,843.3	1,843.3	-	해룡면 호두리 1182	1,843.3	-

※ E-1 자유무역지역

⑧ 방송통신시설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331.0	331.0	-	-	331.0	-
-	D	-1	331.0	331.0	-	해룡면 호두리 1177	331.0	-

⑨ 폐수종말처리장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91,666.4	91,666.4	-	-	91,666.4	-
-	N	-1	91,666.4	91,666.4	-	율촌면조화리921	91,666.4	-

⑩ 폐기물매립장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206,272.2	206,272.2	-	-	206,272.2	-
-	O	-1	206,272.2	206,272.2	-	율촌면조화리920	206,272.2	-

⑪ 호안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95,972.5	95,972.5	-	-	95,972.5	-
-	L	-1	33,928.0	33,928.0	-	동측 및 북측 해면부	33,928.0	-
		-2	39,716.0	39,716.0	-	남측 해면부	39,716.0	-
		-3	22,328.5	22,328.5	-	동측 해면부	22,328.5	

⑫ 노외주차장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61,571.6	61,571.6	-	-	61,571.6	-
-	C	-3	18,207.8	18,207.8	-	율촌면 조화리 935	18,207.8	-
		-4	6,079.2	6,079.2	-	율촌면 여동리 355-1	6,079.2	-
		-5	6,398.9	6,398.9	-	지원시설 4	6,398.9	-
		-6	1,322.3	1,322.3	-	해룡면 신성리 903	1,322.3	-
		-7	1,322.3	1,322.3	-	해룡면 신성리 904-4	1,322.3	-
		-8	662.8	662.8	-	해룡면 호두리 1179	662.8	-
		-9	662.0	662.0	-	해룡면 호두리 1180-3	662.0	-
		-10	3,312.9	3,312.9	-	해룡면 선월리 907-6	3,312.9	-
		-12	6,404.3	6,404.3	-	율촌면 여동리 354-4	6,404.3	-
		-13	17,199.1	17,199.1	-	공장용지 4BL	17,199.1	-

※ C-2 자유무역지역

(다) 자유무역지역(변경없음)

① 공장용지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260,510.1	260,510.1	-	-	260,510.1	-
-	A-7	-1	22,783.0	22,783.0	-	해룡면 호두리 1157	22,783.0	-
		-2	38,827.5	38,827.5	-	해룡면 호두리 1160	38,827.5	-
		-3	82,737.3	82,737.3	-	해룡면 호두리 1158	82,737.3	-
		-4	57,187.5	57,187.5	-	해룡면 호두리 1162	57,187.5	-
		-5	13,112.1	13,112.1	-	해룡면 호두리 1160-5	13,112.1	-
		-6	16,078.2	16,078.2	-	해룡면 호두리 1159	16,078.2	-
		-7	11,438.1	11,438.1	-	해룡면 호두리 1163	11,438.1	-
		-8	18,346.4	18,346.4	-	해룡면 호두리 1161	18,346.4	-

② 공원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22,130.3	22,130.3	-	-	22,130.3	-
-	G	-9	16,057.3	16,057.3	-	해룡면 호두리 1163-1	16,057.3	-
		-10	3,183.7	3,183.7	-	해룡면 호두리 1158-1	3,183.7	-
		-11	2,889.3	2,889.3	-	해룡면 호두리 1160-4	2,889.3	-

③ 유통업무설비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8,203.1	8,203.1	-	-	8,203.1	-
-	F	-2	8,203.1	8,203.1	-	해룡면 호두리 1162-9	8,203.1	-

④ 공공청사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7,185.3	7,185.3	-	-	7,185.3	-
-	E	-1	7,185.3	7,185.3	-	해룡면 호두리 1163-2	7,185.3	-

⑤ 공공공지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364.6	364.6	-	-	364.6	-
-	I	-1	364.6	364.6	-	해룡면호두리1160-7	364.6	-

⑥ 주차장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위치	면적(㎡)	
계			4,923.3	4,923.3	-	-	4,923.3	-
-	C	-2	4,923.3	4,923.3	-	해룡면호두리1163-3	4,923.3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① 공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공장용지 A-1 ~ A-9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공장용지 A-6-22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공장용지 A-1-2, A-1-17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연료전지발전소는 A-1-17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공장용지 A-1-6, A-2-5, A-2-1-3, A-2-1-7, A-2-1-10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중 재활용시설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공장용지 A-1-15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 위험물 저장소 마. 유독물 저장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공장용지 A-2-1-4 A-2-7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공장용지 A-2-2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마항목(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공장용지 A-2-3-1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중 재활용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공장용지 A-2-4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 위험물 저장소, 취급소(황산, 염산, 가성소다 등) 라. 액화가스 취급소(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②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	지원 시설 B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③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C	주차장 C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④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가) 방송통신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D	방송통신시설 D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 방송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전신전화국 및 그 관련시설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나)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E	공공청사 E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 소방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공공업무시설 (소방파출소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다) 유통업무설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F	유통업무시설 F	용도	• 허용용도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물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라) 폐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N	폐수종말처리시설 N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고물상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3)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① 공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A	공장용지 A1~A9	• 차량 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진출입 불가 • 주차장 -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 면적 확보 기준은 관계법규 준수	

②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B	지원시설 B1~B4	• 차량 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대지 내 공지 :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동일하게 유지 :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같거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 :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 불가	

③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D, E, F, N	방송통신시설 D 공공청사 E1~2 유통업무설비 F1~2 폐수종말처리장 N	• 차량 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주차장 -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 면적 확보 기준은 관계법규 준수 • 기타 내용 - 그 외 기준은 당해시설 관계법규 준수	

7.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변경)

❍ 「수도법」 제17조 및 제14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가) 위　　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1번지 일원

나) 목　　적 :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관로 신설

다) 사업규모 : 공업용수관로 D250mm, L=1,41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포스코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괴동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22. 10.

· 준공예정일 : 2023. 1.

9. 관계도서 열람 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061-760-544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함(관계도서 게재 생략)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발행인 전라남도 **편집인** 대변인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061-286-2073